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8. 3.



해양수산부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기관대응수칙

유형 :
대규모 해양오염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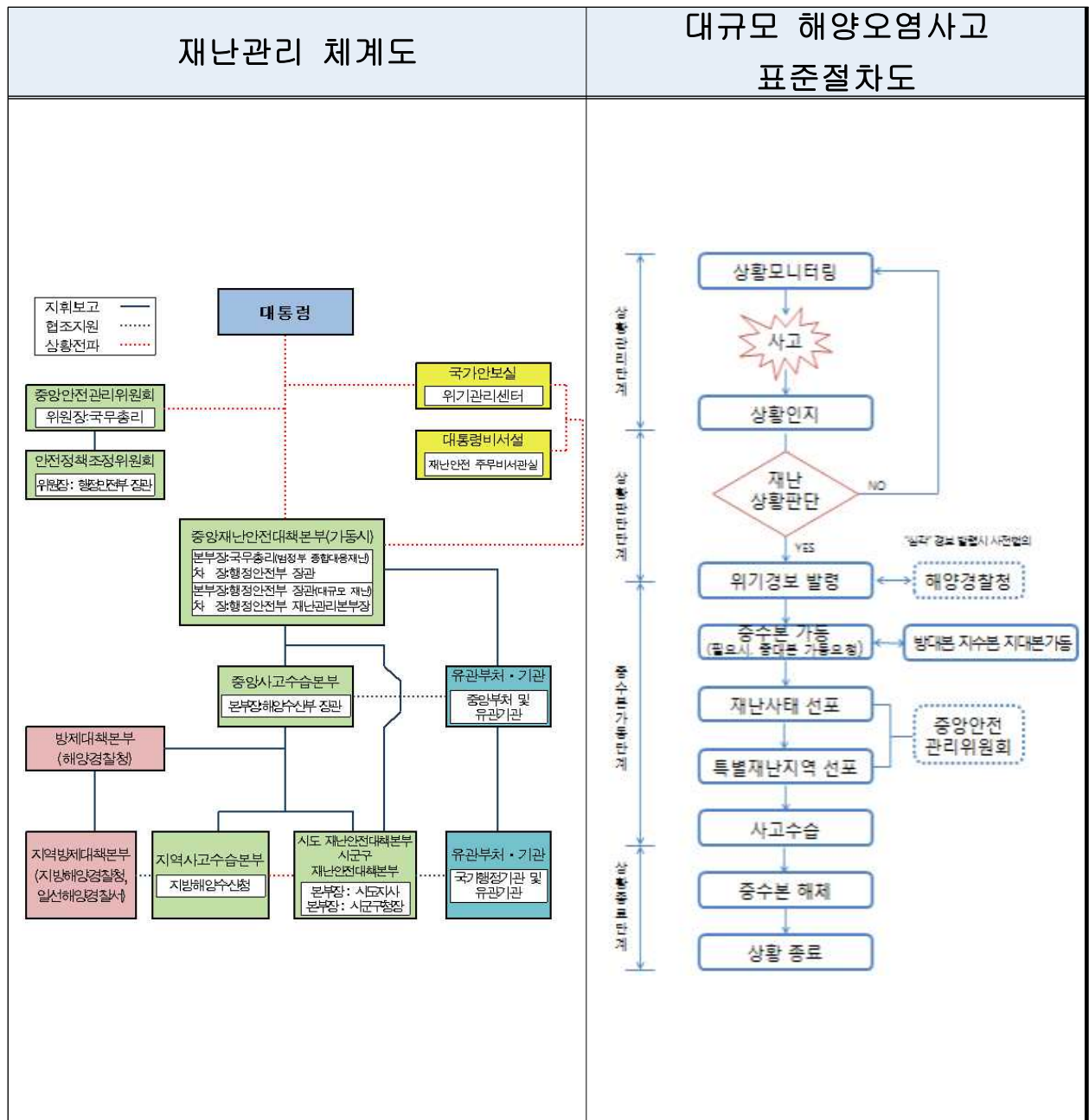
관리번호 :

관련 매뉴얼

○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 해양수산부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환경부

I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II 해양수산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프로세스

구 분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초동대응 단계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수 습 복 구 단 계	
초기 대응 부서	종합 상황실	상황접수 - 초기상황 접수 및 파악 - 사고접수(해양경찰청/지방해양수산청) - 사고상황 및 심각도 판단 상황전파 및 보고 - 해양환경정책과 및 부내 관련부서 - BH, 총리실 등 유관기관 전파 - 필수요원 비상소집		-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 부내 관련부서,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 현장의 소방, 경찰, 지자체 등에 사고전파 - 유사시 현장 출동태세 유지 요청 -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접수 및 전파		중수본 운영 - 중수본 내 종합상황실(6개반)구성 및 24시간 상황근무체제 가동 - 총괄반, 상황반, 홍보반, 현장지원반, 복구 대책반, 보상지원반 - 현장 상황보고서 접수 및 중수본 상황보 고서 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중대본 운영 - 상황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전파, 관계부처 동향 장·차관 보고 6하원칙에 따른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현장 상황보고서 접수 및 중수본 상황보고서 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해양 환경 정책 과	- 담당과장·계장·담당자 정위치 - 해양환경정책과 2명 - 해양경찰청 상황실 - 지방해양수산청 2명 - 초기상황파악 및 보고 - 사고현황 파악(유출성분, 유출량, 오염범위 등) - 사고대응 현황 파악(방제세력, 동원가능 기자제 등) - 사고해역 주변 현황 파악(어장, 양식장, 관광지 등) - 보고방법 : 담당 실·국장, 장·차관 동시에 유선 및 문자메시지 보고		- 사고상황 내부전파 및 보고(국장, 실장, 차관, 장관) - 초기 사고상황(유출량 등) 확인 및 사고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의 대응 현황 확인 - 위기경보 발령여부 검토(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 해양경찰청의 위기경보 발령 요청시 즉시 발령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여부 판단 및 소집 - 의장(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정책과장(간사), 해양보전과장, 해양생태과장, 항해지원과장, 해경청 기동방제과장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 등 - 위기경보 발령 여부 및 경보 수준 판단 - 중수본 운영 필요성 검토 및 운영방식 결정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심각단계 발령으로 중대본 구성시 중수본 가동, 중대본과 공조)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 비상연락망 점검 및 자체 대비 태세 점검 요청		중수본 구성(본부장 : 장관) - 총괄반(해양환경정책과, 상황반(해사안전관리과), 홍보 반(홍보담당관), 현장지원반(해양안전과, 복구대책반 및 보상 지원반(필요시 구성 - 방제완료시까지 운영사고 수습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유관기관 인력 파견요청(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 재난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총원·조달방안 마련(자원봉사자 대민지원 포함) - 긴급해양오염조사 및 어장·양식장 피해 현황 조사 - 선주측에 해양오염영향조사 시행 요구 - 기름 유출량 100kl 이상 시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 지역 선포 검토 및 요청	해양방제 조치(해양경찰청 및 해양환경공단 등) 및 해안방제(지자체) 조치 - 해안방제 작업시 해양경찰청에 인력·장비 지원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요청 -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광역)구조본부와 협조·지원체계 구축 - 재난 및 방제사고와 관련된 관계부처(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기상청 등) 협조요청 - 중대본과 연계된 협업기능에 대한 관계부처(협업부처) 협력체계 가동 요청 - 해양·수산업에 국내외 영향 대치를 위한 관계부처(기재부 등) 행·재정 지원 요청 지역사고수습본부 24시간 상황근무 체계 유지 지시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지역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및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대책 검토 - 사고지역 피해 현황 조사 - 피해지역 주민 지원 대책 강구 - 오염방제 및 사고대응 비용 정산 및 청구방안 검토	
	장 · 차 관	초기상황 확인 - 초기상황 확인(보고 : 해양환경정책과) - 피해현황 및 현장 대처상황 파악 - 해양경찰청장 및 지자체장파 유선통화→추가사항 파악(지시사항 유무 등)		- 사고상황 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위기경보 발령 필요성 판단 및 최종 승인(긴급상황시 사후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필요성 판단 - 심각단계 경보 발령시 - 경계단계 경보 발령시 필요성 판단 -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요청(필요시)		중수본 운영 총괄 - 위기경보 수준 조정 및 중수본 운영방식 검토 -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조치 결과 확인 - 중수본 종합상황실 점검 및 대책지시 - 지방사고수습본부 가동 현황 점검 - 피해확산 방지 및 초기수습을 위한 지시 (필요시)현장방문 및 피해상황 확인 - 언론보도 및 대국민 홍보 총괄	- 중대본 본부장과 사고수습 협의(소속 공무원 연락관 파견 등) - 상황보고 청취 및 중대본 연계 자체 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참석 - 언론브리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중대본부장·지대본부장·지수본부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원 필요사항 검토·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현황 점검 및 대책 지시	- 위기경보 해제 및 중수본 해제 결정 (필요시)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VIP, 총리께 상황보고, 현장방문 시 수행 - 피해보상 관련 업무분장 및 역할 조정 - 중대본 및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 재난복구 협력 총괄 - 재난합동조사단 협력(소속 공무원 연락관 파견)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협력(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참석)	
	담당 실·국장	- 초기상황 확인(보고 : 해양환경정책과) - 상황실, 해양환경정책과에 긴급조치 지시		- 자체위기평가회의 주관 - 위기경보 발령단계 결정 - 관심(선박사고 및 해양시설 사고시), 주의(기름 등 유출 사고 발생시) - 경계(유출된 기름 등의 어장 확산우려시), 심각(100 kl이상 유류유출시) - 중수본 사고수습대책회의 총괄 -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 -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지원 필요사항 검토·지원		중수본 운영 - 중수본 상황회의 주관(2회/일) - 중수본 실무반 별 역할 분담 및 조치사항 점검 - 해양오염방제 지원에 관한 부처 간 협의	- 장·차관보좌, 중수본 운영 - 대국민 행동요령 등 인터뷰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피해복구 자원 등 파악·지원	
	대변인	- 상황보고 확인 - 언론 모니터링 등 보도내용 확인 - 내부보고자료 수신 : 상황실로부터 유선 및 문자로 수신		-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준비 - 현장 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 현장 대변인 :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 구성(홍보반,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 - 상황보고 확인, 중수본 및 중대본 관련 언론대처정책 설정 지원 - TV, 인터넷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확·미확인 보도(오보 및 유언비어 등) 대처 - 장·차관 지시 및 중대본·지대본·지수본 협조체제로 언론대처방향 설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장·차관, 필요시 대언론 브리핑 및 전문가 브리핑 - 중대본 관련 전문가 인터뷰 지원 및 자원봉사자 관련 보도자료 지원	-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사고대응·수습활동 홍보(국민불안 해소) - 장관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유관 부서	- 국가안보실 : 부처·기관의 위기대응체계 가동실태 확인,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보고 -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정부 대응방향 제시, 대응활동 조정 - 해양경찰청 : 상황보고·전파 및 초동조치(유출방지, 유출유파악, 유출유 확산경로 예측 등), 방제대책본부 운영, 해상방제시 수거된 폐유·폐기물처리, 해양방제시 물자지원, 사고선박 구난(인양포함) 및 잔존유 이적조치 - 보건복지부 : 방제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 지원, 오염물질·폐기물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환경부 : 수거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폐기물 등의 처리지원, 육상지역 오염에 대한 영향조사 실시(대기, 수질 등),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자연공원 생태계영향평가 실시 - 고용노동부 : 방제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지침 제공, 배출물질에 대한 보호구의 성능 및 보건안전기준 제공, 방제작업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진단·점검 - 기획재정부 : 긴급방제조치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국민 상용 유·무선 통신지원, 초단파대 해상통신용 주파수 관리 및 지원 - 기상청 : 방제선박 안전과 오염물질의 확산예측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관리에 따른 관련정보 지원							

Ⅲ 해양수산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부서별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재난현장 환경정비
주관부서	종합상황실		해양환경정책과(총괄반)		해양보전과(현장지원반)
연계부처	-	-	-		해양경찰청
주요 업무	<평시> - 인터넷, TV, CCTV 등 언론매체 활용 실시간 재난 상황모니터링 - 재난 상황 전파·보고(BH, 총리실, 장·차관) - 상황전파, System조작 등 상황관리 훈련 - 중앙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점검	<재난발생시> - 초기 상황판단 - 방제대책본부, 지방사고수습본부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 - 현장 사고대응·수습 현황 모니터링 및 내·외부 보고체계유지(BH, 총리실, 장·차관, 해양환경정책과)	<평시> - 재난 유형별 도상 및 현장 훈련(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등 참여) -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매뉴얼 정비 - 해양시설(기름저장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유도 - 중앙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난발생시> - 자체위기평가회의 소집, 결과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중수본 업무 총괄 - 중수본 비상근무 발령(상황관리 등 필요 협업가능 근무자) - 유관기관 소속 직원 중수본 근무 파견 요청(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 중수본 상황보고서 작성 총괄 및 내·외부 보고 - 재난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총원·조달방안 마련(자원봉사자 대민지원 포함) - 긴급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 상황대처 일일보고서 작성(2회/일) - 피해상황(기름 등 유출량, 확산정도 등) 및 방제작업 현황 파악 - 방제세력 동원 현황, 폐유·폐기물 수거량 등 파악 - 방제 기자재 현황 파악 등 사고 대응 현장 지원대책 수립
					- 사고해역 해상통제 실시 및 방제 조치 요청 - 지자체 해안방제시 인력·기술·물자 등 지원 요청 - 방제작업 관련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확인 및 지원 요청 - 사고선박 구난 및 잔존유 이적조치 확인

기능	③ 물자관리 및 자원 지원	④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⑤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⑥ 사회질서 유지	⑦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⑧ 재난 수습 홍보
주관부서	해양보전과(현장지원반)	해양환경정책과(총괄반)	해양보전과(현장지원반)	해양보전과(현장지원반)	해사안전관리과(상황반)	홍보담당관(홍보반)
연계부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방청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환경부, 소방청	-
주요 업무	- 해양오염방제 현장 지원대책 수립 - 지자체 및 일부행정기관 해안방제시 인력·기술·물자 등 지원요청	- 방제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 지원 확인 - 오염물질·폐기물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훈련 및 교육 포함)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 유류오염 피해지역 현지사고 수습상황 파악 및 전파 -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파악 및 응급조치 협력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언론기관 업무협조(브리핑·인터뷰 등) -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해양경찰청과 공동대응)

IV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 처	주 요 임 무		
	사전대비	초동조치	중수본·중대본
해양수산부	·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 해상교통상황 모니터링 · 위기징후 평가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양식장 등 모니터링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해류 등 기상상태 확인	· 위기징후 평가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사고지역 지방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및 중수본 운영체제 구축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 지원 · 정부의 대처 노력 대국민 홍보 지속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응 및 조치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양식장 등 피해 현황 파악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해류 등 기상상황 확인 제공 · 사고해역의 인공위성 영상자료 지원	· 중앙(지방)사고수습본부 운영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 구성·운영 및 사고수습 관련 언론 대응 총괄 · 현장 지원반 파견 및 현장상황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사고해역 주변 해상통제 실시 및 방제조치 · 외국 방제선박의 항만이용 편의제공, 국내·외 방제항공기 등 방제자원 지원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및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청구절차 홍보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협력강화 · 사고해역의 인공위성 영상자료 지원
해양경찰청	· 상황센터 24시간 운영 ·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 방제 자원 등의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 ·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 체제 강화	· 방제대책본부 운영체제 구축 · 위기징후의 지속적 감시 및 전파 ·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체제 유지 · 긴급방제장비의 동원 및 방제 인력 운용 체제 유지	· 해양오염 긴급방제 총괄 지휘 ·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유출방지, 유출유 파악, 유출유확산경로 예측·추적,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등) · 중앙(지방)사고수습본부 전파체계 유지 및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지자체 및 일부행정기관 해안방제시 인력·기술·물자 등 지원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 및 현지에서의 유관기관 지원·협조 요청 · 환경피해 민감지역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지원 요청 · 환경피해 민감지역 보호조치 및 방제상황 파악 유지 및 주기적인 상황전파 · 단계별(초동, 방제, 방제종료) 방제전략 수립·시행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방제현장 언론 대응 · 국가 방제세력 동원 및 해상방제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 사고선박 구난(안양포함) 및 잔존유 이적 조치 · 국내외 방제자원의 긴급 동원 요청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국무조정실	·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및 범정부 차원의 대비계획 점검 확인	· 주관 및 유관기관의 대비계획 점검 확인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정부 대응방향 제시, 대응활동 조정
행정안전부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시 대응대책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주의상황 원인 및 진행사항 분석·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확인 ·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주관기관 대응활동 파악·전파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소관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검토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필요시) · 유관기관 필요사항 협조 및 지원 요청 ·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주관기관 대응활동 파악·전파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소관부서 및 지자체 등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현지파견(필요시) · 재난사태 검토 및 선포(필요시)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필요시) · 피해지역 지자체 사고수습을 위한 행·재정 지원검토 ·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및 공무원 복무관리(필요시) · 사고 상황관련 언론 브리핑 및 對국민담화문 발표(주관부처와 공동대응)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주관·유관기관에 필요사항 협조 및 지원 요청, 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 방제현장 비상통신 지원
기획재정부			·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등 재정지원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국민 상용 유·무선 통신지원, 초단파대 해상통신용 주파수 관리 및 지원	· 대국민 상용 유·무선 통신지원, 초단파대 해상통신용 주파수 관리 및 지원
외교부			· 해외 방제세력의 지원·협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조정 및 교섭
법무부			· 해외 방제지원 인력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입·출국 수속
국방부	· 해상/해안/도서 오염방제 지원체제 마련	· 해상/해안/도서 오염방제 지원체제 가동	· 방제인력 및 장비 지원
보건복지부	· 방제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 장비 마련	· 방제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 지원	· 외국지원 방제선박/항공기에 대한 검역 등 입국협조 · 방제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 지원
환경부	· 위험구역의 설정, 물질특성, 취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위험구역의 설정, 물질특성, 취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거된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 폐기물 등의 처리 지원 · 육상지역의 위험·유해물질오염에 관한 영향조사 실시(대기, 수질 등) ·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자연공원에 대한 생태계 영향평가 실시 · 오염물질·폐기물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소방청	· 인명구조·구급 긴급 대응태세 점검	· 재난현장 소방력 전진배치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검토	· 긴급구조 및 현장대응 운영규모 격상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관리에 따른 관련정보 지원	·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조치	·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조치 지원
기상청	· 해양기상정보 주관·유관기관 제공	· 해양기상정보 주관·유관기관 제공	· 방제선박 안전과 오염물질의 확산예측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경찰청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출입통제 등) 및 사상자 신원확인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출입통제 등) 및 사상자 신원확인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출입통제 등) 및 사상자 신원확인
관세청		· 해외 방제자원의 신속한 통관 지원	· 해외 방제자원의 신속한 통관 지원
지자체	· 해안방제 지원체제 구축 · 해안오염 방제를 위한 지자체 등 확보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 추진 ·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가동 준비	· 기름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방제 실시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해안방제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및 어장피해증거수집 지도 및 양식어업인 교육 · 방제상황에 따라 어업재개 조치 및 피해 양식시설 철거 · 야생동물 보호대책 및 현장 의료지원 및 해안방제 작업자 관리 · 피해해역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 유통통제 · 해안방제 자원봉사자 현장 교육·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협조요청사항 지원

관 련 기 관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BH	○ 국정상황실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260 02-770-4383
국무조정실	○ 안전환경정책관 안전관리과 환경정책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해양수산정책과	044-200-2348 044-200-2351 044-200-2240
기획재정부	○ 세제실 관세제도과 ○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 안전예산과	044-215-4411 044-215-7353 044-215-7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02-2110-1944 02-2110-1997
외교부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	02-2100-7748
법무부	○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방부	○ 전력지원관리실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8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 ○ 재난관리실 사회재난대응과 ○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044-205-1540~5 044-205-5217 044-205-5256 02-2100-3768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과	044-203-2290 044-203-2918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4-202-2551 043-719-7143
환경부	○ 자연보건국 자연공원과 ○ 자연보건국 생물다양성과 ○ 환경정책실 환경보건관리과	044-201-7314 044-201-7244 044-201-6815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5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환경정책과 ○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안전관리과 종합상황실 ○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	044-200-5283 044-200-5851~9 044-200-5895~7 044-200-5511~24
해양경찰청	○ 상황센터 ○ 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	044-205-2142 044-205-2195
기상청	○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	02-2181-0750
관세청	○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042-481-7852
소방청	○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044-205-7616
문화재청	○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경찰청	○ 위기관리센터(평일, 주간) ○ 치안상황실(야간, 휴일)	02-3150-2856 02-3150-2229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지원국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314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61호)」을 근거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재난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재난상황에서는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함
- 가급적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함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제·개정 내용	사유	담당	협의기관
'13.04	•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실무매뉴얼 정비		해양환경 정책과	· 실무 및 행동매 뉴얼 작성기관
'13.10	• 위기정보 단계별 판단기준 구체화 • 위기정보 수준별 주관기관 중 조치내용 신설 등	•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 개정(13.08.)	해양환경 정책과	· 실무 및 행동매 뉴얼 작성기관
'14.09	• 위기형태 추가 • 위기정보 단계별 대응임부 추가 • 위기정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 할 추가	•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 개정(14.07.)	해양환경 정책과	· 실무 및 행동매 뉴얼 작성기관
'15.04	• 중앙사고수습본부 편성 및 실무 반별 임무 변경 • 위기관리 종합체계 변경 등	•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 개정(15.04.)	해양환경 정책과	· 실무 및 행동매 뉴얼 작성기관
'17.08	• 유관기관 협업기능(역할), 위기 관리 대응체계도, 비상연락망 등 현황화	•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 개정(15.04.)	해양환경 정책과	· 실무 및 행동매 뉴얼 작성기관
'18.03.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수정 • 긴급대응반 구성 및 역할 추가 • 초동조치 주요조치 및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수정 • 대국민 행동요령 수정 • 기타 문맥 및 오탈자 수정 등	•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 개정(17.11.)	해양환경 정책과	· 실무 및 행동매 뉴얼 작성기관

목 차

제1장 개요	1
제1절 목 적	2
제2절 관련법령 등	2
제3절 적용 범위	3
제4절 위기 형태 및 원인	4
1.4.1. 형태	4
1.4.2. 원인	4
제5절 위기경보,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5
1.5.1. 위기경보	5
1.5.2. 위기대응 지침	9
1.5.3. 판단/고려 요소	11
제6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2
1.6.1. 위기대응 체계도	12
1.6.2. 위기대응 기구	13
제2장 위기대응 조치	20
제1절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21
2.1.1. 관심(Blue)	21
2.1.2. 주의(Yellow)	25
2.1.3. 경계(Orange)	29
2.1.4. 심각(Red)	33

제2절 상 황	38
제3절 조치목록 및 단계별 조치내용	39
2.3.1. 조치목록	39
2.3.2. 단계별 조치내용	40
제4절 주요 핵심사항 조치내용	46
2.4.1. 피해주민 지원 및 보상	46
2.4.2.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복원	52
제5절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임무·역할	57
2.5.1.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조치사항	57
2.5.2. 지역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	64
 제3장 행정 및 협조사항	 66

부 록

1. 방제기술	68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73
3. 피해보상 지원 참고자료	87
4.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102
5.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12
6.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사항	114
7.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16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과 협조기관의 위기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함

제2절 관련 법령 등

가. 해양환경보호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 「수산업법」
- 「국가긴급방제계획」

나. 재해/재난 및 안전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 「해사안전법」
- 「항만법」

다. 해양오염국제협력 및 피해 배(보)상 관련

-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 「위험·유해물질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의정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 「상법」

라. 기타규범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절 적용 범위

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적용되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조치사항에 적용

나. 우리나라 관할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연안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적용

다. 동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는 동 매뉴얼을 준용하여 조치하되, 사고수습반 구성 등은 탄력적으로 운용

라.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에 적용

- (1)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제주특별자치도 및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지역관내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방제를 포함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에 본 실무매뉴얼을 적용

※ 해양환경공단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공단의 기본방제계획서 및 지사 방제대응계획서로 대체

- (2) 해안이 인접한 시·군·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국가긴급 방제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함께 적용

제4절 위기 형태 및 원인

1.4.1 형 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규모의 해양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양식장 및 발전소등 환경민감지역과 해안에 대규모 기름이 유입되어 어장·양식장, 원자력·화력발전소, 임해공단, 어패류축양장 또는 해양생태계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상황

1.4.2 원 인

☐ 대형유조선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을 유출하는 사고 발생

- 원유수송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석유제품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해양시설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을 유출하는 사고 발생

- 정유공장의 급유시설(돌핀시설 · 로딩암 등) 파손
- 원유선 계류부이 또는 해저송유관의 파손
- 정유공장의 저유탱크 또는 송유관의 파손

☐ 대형선박에서 해양에 대규모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사고 발생

- 중질유를 연료로 하는 대형화물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중질유를 저장하는 부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HNS(위험·유해물질) 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제5절 위기경보,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5.1 위기경보

□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 (재난가능성 예측) - 대형유조선 충돌, 침몰, 좌초 사고 및 해양시설 파손	○ 징후활동 감시 ○ 사고대응 근무체계 가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2명 -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 지방해양수산청 2명
주의 (Yellow)	○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사고발생(재난가능성 출현)	○ 협조체제 가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및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사고 초기 대응
경계 (Orange)	○ 유출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이 어장, 양식장 및 연안 지역까지 확산 우려(재난가능성 농후)	○ 대비계획 점검 ○ 중앙사고수습본부·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가동(필요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력 요청(설치시)
심각 (Red)	○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지속성 유류 100kl, 비지속성 유류 300kl 이상 유출 등) 및 유출된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HNS)로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중앙사고수습본부·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력 강화(설치시)

※ 다만, 위기발령기준은 위기경보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체위기평가회의(위급 상황 시에는 유·무선 또는 SNS로 가능)」에서 결정하되 가급적 「심각」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기경보 절차

- ①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포착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유출량 추정·유출성분·유출범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발령 사항을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이하 같음)에게 요청

※ 다만, 긴급 상황시에는 유·무선(SNS 포함. 이하 같음) 및 서면회의 가능

- ②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의 위기경보 발령 요청시에는 즉시 발령하거나, 자체위기평가회의(다만, 위급 상황시에는 유·무선으로 가능)를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대응과)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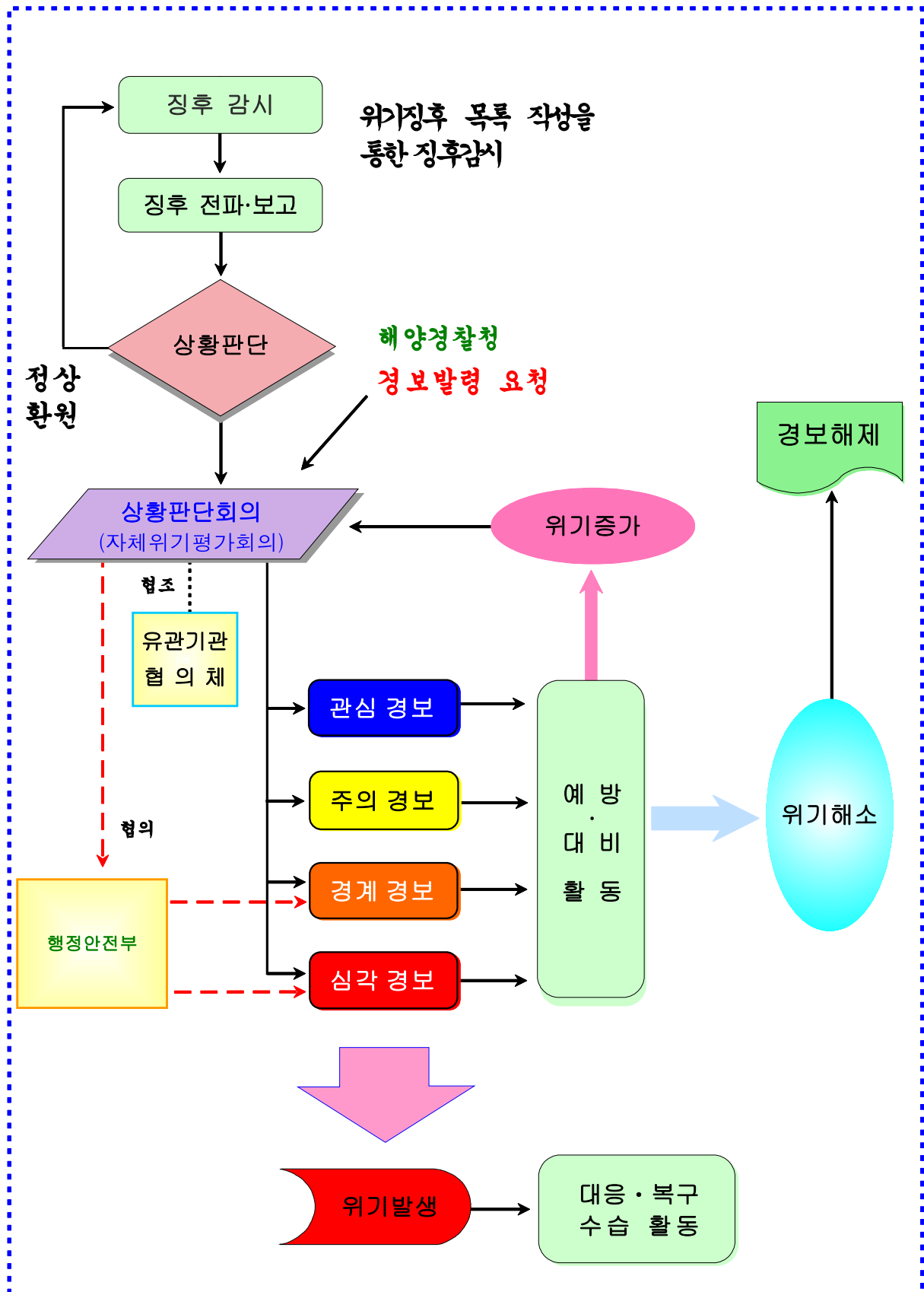
※ (자체평가회의 구성) 해양환경정책관(의장), 해양환경정책과장(간사), 해양보전과장, 해양생태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

- ③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시에는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우선 사전조치(위기경보 발령)를 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
- ⑤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시 접수기관은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등) 등에 협조 요청

위기상황판단/평가회의 보고서

위기유형			
경보내용			
보고번호		기관명	
관련근거(출처)			
통보기관			
1. 관련상황/정보			
2. 분석/판단			
3. 조치사항			
작성자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직책 (성명) (전화)		

〈위기경보 발령체계〉



1.5.2 위기대응지침

□ 대응개념

- 목표 :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수습
- 대응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의사결정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초동조치로 피해 최소화
 - 범정부 차원의 현장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연안 어장/양식장 등 민감 시설·자원의 보호 우선

□ 대응지침

- 사고개요, 오염범위, 선체(해양시설)상태, 피해사항, 현지기상, 언론 보도 등 현장정보를 정확히 파악, 신속하게 보고·전파
- 현장 방제 및 피해상황을 고려한 범 정부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속한 방제 활동 등 사고수습 지원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으로 지원체제 구축
- 민간(피해주민 대표, 피해조사기관 등) 및 국제(인접국, IOPC Funds 등)협력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수습
- 위기관리 상황 및 사고수습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 지원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본부 구성·운영 및 취재 지원 등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및 오염사고정보 제공을 통한 인근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 대응차원의 홍보활동

구 분	내 용
홍보주체	○ 단순 사안 : 해수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요 사안 : 관계장관 합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홍보의 대상	○ 일반 국민 ○ 피해지역 어민 및 항해 선박 ○ 언론(외국언론 포함)
홍보 목표	○ 피해현황 및 방제상황 전파
주요 홍보 메시지	○ 피해 전개상황에 대한 정부 대처방향과 방제 진척 상황 ○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 피해지역 어민 및 주민 생계지원 대책 등
홍보 수단	○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외신 포함) ○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주요인사 언론 인터뷰 ○ 방송 출연 ○ 전문가 기고 ○ 신문·방송 광고 ○ 홈페이지·간행물·문자 메시지·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등 ○ 문자전송서비스, 재난방송 전파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 재난정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 해당 기지국 ➡ 대국민 홍보 〈재난온라인 방송시스템(DITS)〉 재난정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 방송통신 위원회 ➡ 각 방송사 (수도권, 지방)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재난정보 주관 기관에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시지 전달

1.5.3 판단/고려 요소

☐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긴급구난 및 조치 가능성 검토

- 선체 상태에 관한 정보 수집
 - 선박의 수리·인양·유출구 봉쇄 등의 가능성
- 해상상황 및 기상에 대한 정보 수집
 - 파고·안개·풍속 등 방제활동 제한 여부

☐ 방제세력의 지원범위 결정

- 유출유의 확산범위, 유출량, 유종에 적합한 장비 지원
- 오염확산 여부를 판단, 방제장비·자재 및 인력 추가지원 준비
- 동원 거리/수단/도착시간을 검토

☐ 피해 가능성 검토 및 피해최소화 방안 검토

- 유출유의 연안 유입 가능성을 검토
- 피해대상 시설물(양식장 등)의 분포 정도 파악
- 오일펜스를 이용한 연안유입 차단 필요성 등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 외국의 방제세력 지원요청 및 현장투입 방안 검토

- 방제대책본부(해양경찰청)의 지원 협조요청 전제
- 인접국의 방제세력의 현장 투입장소와 효과 등 검토

☐ 언론 브리핑 시기/방법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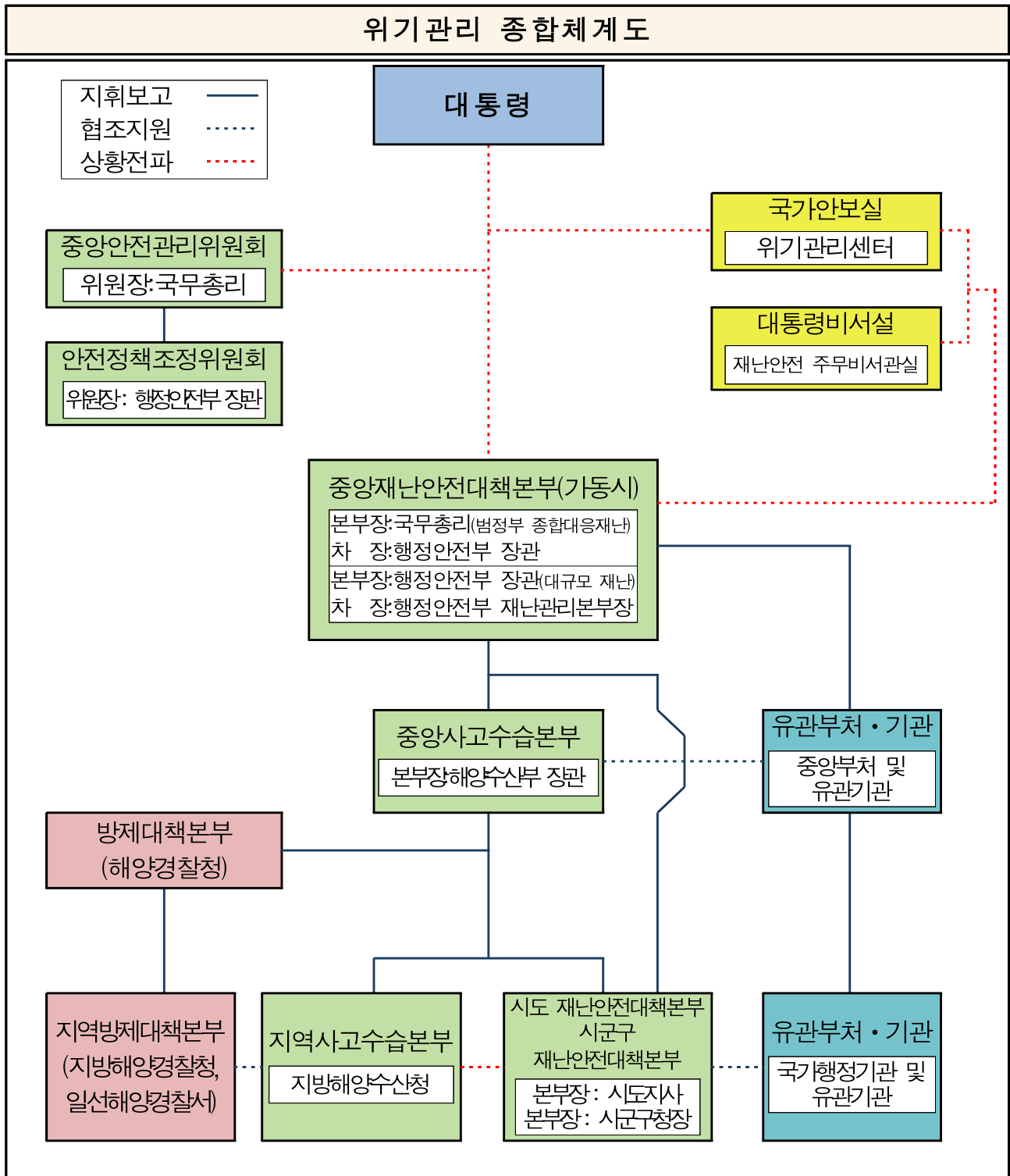
- 최초 단계 : 사건 발생 직후(사건 개요 위주)
- 수습 단계 : 최초 브리핑 실시 후(취재 지원)
- 최종 단계 : 사건 종료 후(조사결과 및 향후대책)

※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리핑, 막연한 예측 지양

제6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6.1 위기대응 체계도

가. 종합체계도



※ 일반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경우 사고해당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사고현장 확인 후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종합상황실)와 해양경찰청(상황센터)에 상황 보고(통보)

1.6.2 위기대응기구

1.6.2.1. 해양수산부의 대응체계

□ 긴급대응반

○ 일반사항

- 위기경보 경계단계 수준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등 필요시 설치

※ 해양오염사고 진행상황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확대·운영

- 구성

- 반장 : 해양환경정책관
- 반원 :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과 직원 1명, 해양경찰청 1명, 해양환경공단 1명 이상

※ 사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해경청 및 공단직원은 필요시 참석)

- 임무·기능 : 대내외 상황 접수·전파 및 보고,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방제조치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 등

□ 현장파견관

○ 일반사항

- 위기경보 경계단계 수준이상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사고지역에 현장파견관 임명
- 원칙적으로 해양환경정책관 소속 과장 또는 소속직원을 현장으로 파견하되 사고상황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방제대책본부 구성원 중 1명을 현장파견관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임무 및 역할 : 해양오염진행 및 피해상황,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파악 및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 일반사항

- 자체위기평가회의의 결과에 따라 설치
 - 경계단계 발령시 필요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검토를 건의
 - 심각단계 발령시 중수본을 가동하고 중대본 설치를 건의
- 관련부처(서) 회의를 통한 지원 대책을 수립
 - ※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일 1~2회 회의개최
- 운영 장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또는 회의실
- 본부장 : 해양수산부장관

○ 임무·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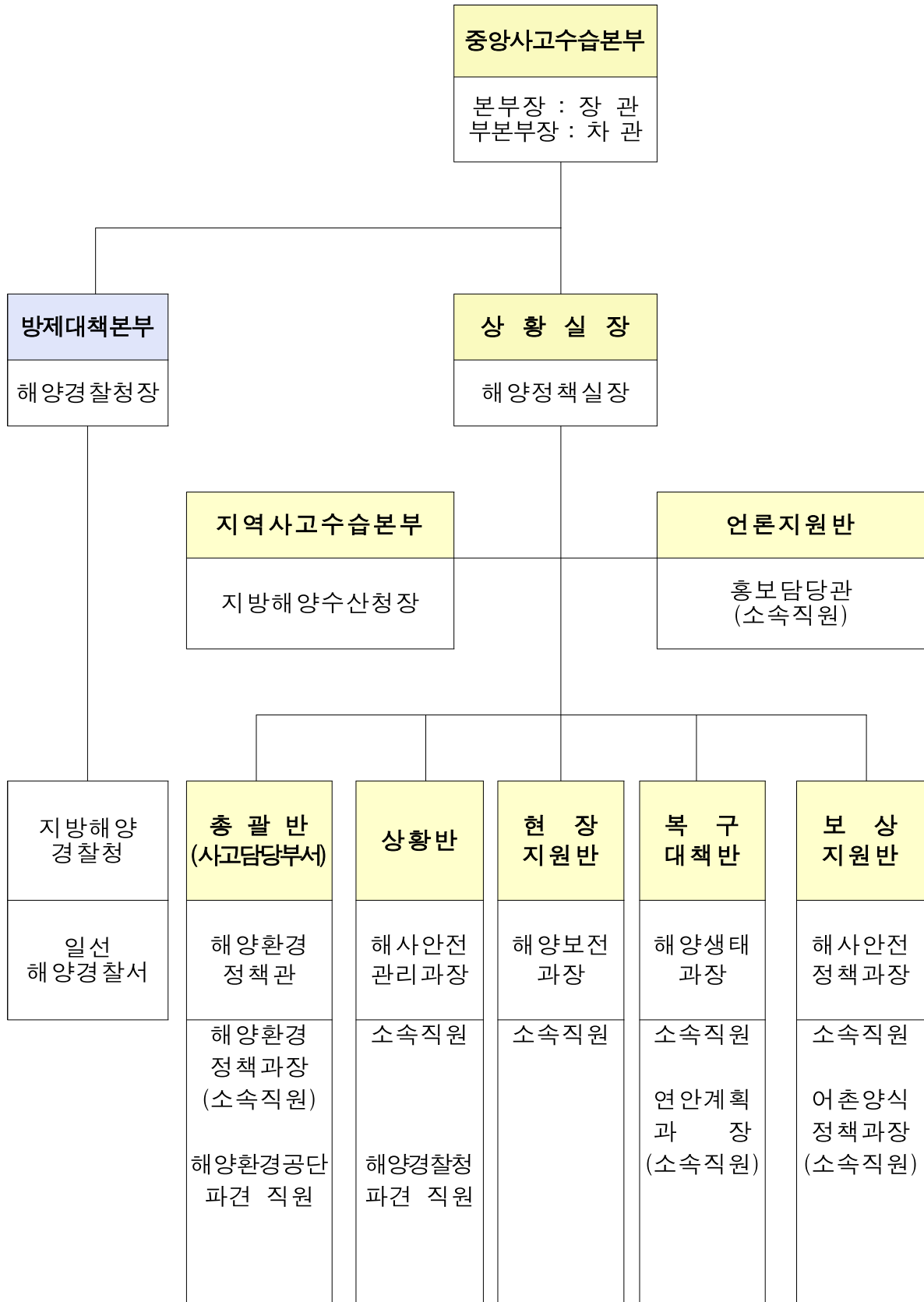
- 현장상황 및 정보의 분석·평가
- 해상 안전대책·환경피해 최소화대책 수립
- 기름오염 피해조사 및 보상 지원대책 수립
-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대책 수립
- 해양오염방제 현장 지원 대책 수립
-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관계부처 협의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3항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구성 및 반별 임무

- 구 성



※ 반별 반장 및 반원은 사고유형 및 피해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 반별 임무

구 분	구 성	임 무
총괄반	○(반장) 해양환경정책관 ○(반원) ·해양환경정책과 (과장 및 소속직원) ·해양환경공단 파견직원	○사고수습 업무 총괄지휘 ○사고 수습 추진상황 종합보고 (대내·외) ○사고 수습대책 수립 및 대책회의 주관 ○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 및 국제협력 ○각 실무반 활동사항 지원 ○각 반별 활동 및 조치사항 정리·보고
언론지원반	○(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소속직원	○사고관련 상황의 홍보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언론기관 업무협조(브리핑·인터뷰 등) ○사고수습기관과의 언론협조
상황반	○(반장) 해사안전관리과장 ○(반원) ·해사안전관리과 소속직원 ·해경본부 파견직원	○사고상황 및 수습 현황 파악, 전파 ○지역사고대책본부와의 업무연락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파악 및 응급조치 협력
현장지원반	○(반장) 해양보전과장 ○(반원) 해양보전과 소속직원	○현장지원 지휘 ○해양오염방제 현장 지원대책 수립·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제대책본부 등 회의 참석(파견포함) ○현장 조치상황 파악·보고
복구대책반	○(반장) 해양생태과장 ○(반원) ·해양생태과 소속직원 ·연안계획과(과장 및 소속직원)	○피해지역 복구대책 업무 총괄 ○피해복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해수욕장 복원 등 연안정비 지원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복원대책 강구
보상지원반	○(반장) 해사안전정책과장 ○(반원) ·해사안전정책과 소속직원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및 소속직원)	○유류사고시 국제기구(IOPC Funds)에 통보 ○유류오염사고 보상청구 지원대책 수립 ○유류오염사고 보상청구 안내 및 지원 ○피해 보상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의 ○사고해역 주변 양식장/어장 현황 파악 및 피해현황 파악 ○양식장/어장 환경조사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조치

- 운영방법(사고수습상황에 따라 개편)

- 반별 근무자 편성, 근무시간(09:00~익일 09:00), 임무부여 등
- 사고규모 및 수습상황을 감안, 중수본 체제에서 보상 및 사고수습 전담 T/F로 전환

□ 방제대책본부

-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

□ 지역사고수습본부(지수본)

- 중수본 설치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설치를 지시

- 구성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총괄반 (해양수산환경과)	상황반 (선원해사안전과)	현장지원반 (항만물류과)	복구지원반 (항만건설과)	대외협력반 (항로표지과)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반장 해양수산환경과장	반장 선원해사안전과장	반장 항만물류과장	반장 항만건설과장	반장 항로표지과장	반장 운영지원과장
소속직원	소속직원	소속직원 관공선 직원	소속직원	소속직원	소속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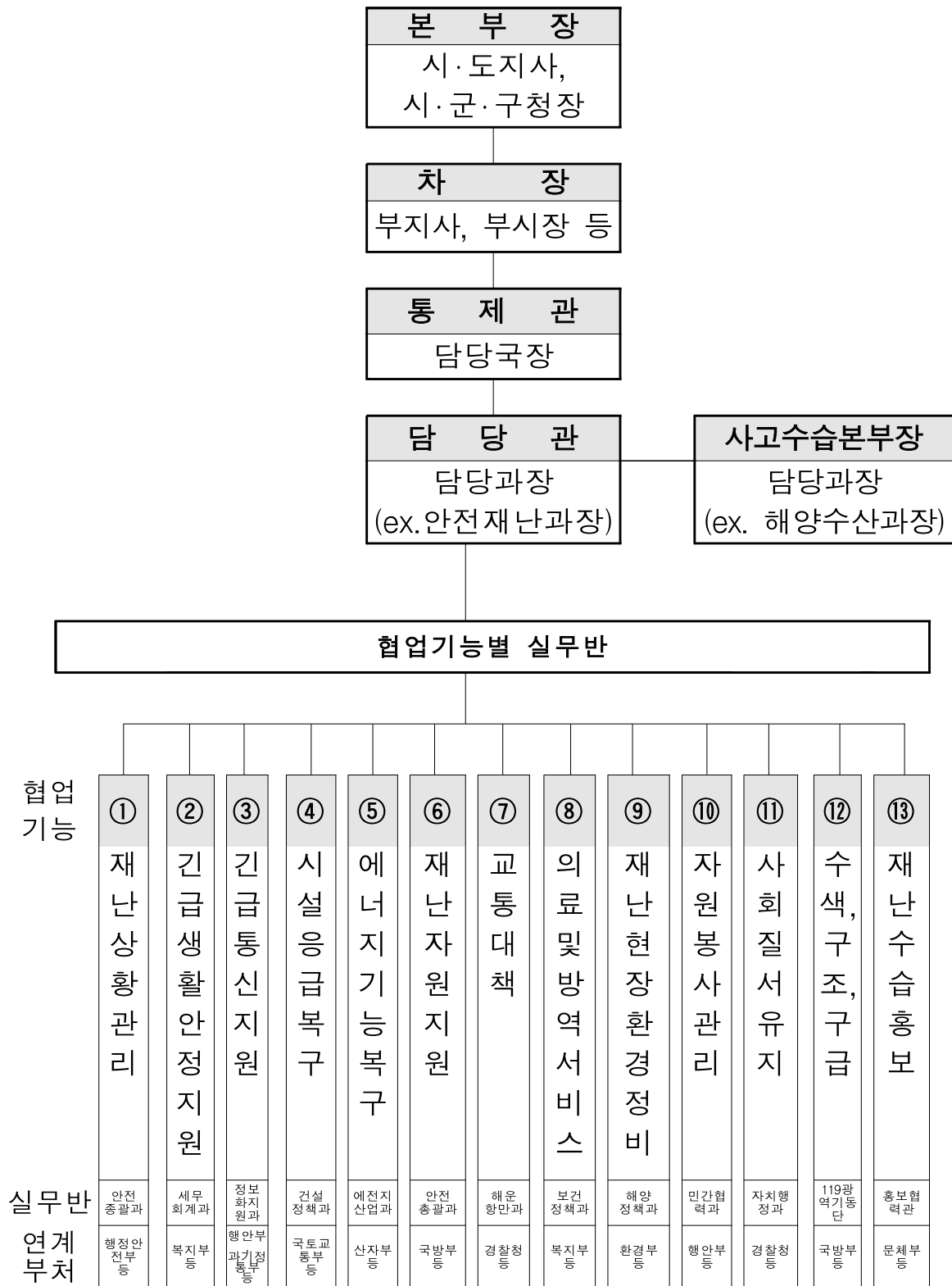
- 임무

구분	반장 및 반원	임무
총괄반	반장 : 해양수산환경과장 반원 : 소속직원 전원	○ 사고수습 총괄 지휘 및 본부장 보좌(반장) ○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사고수습 추진상황 종합보고서 작성 ○ 방제장비 현황파악 등 지원대책 수립 ○ 사고원인 파악, 분석 및 보고
상황반	반장 : 선원해사안전과장 반원 : 소속직원 4명	○ 상황반 지휘 및 본부장 보좌(반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대외 상황보고(통보) ○ 해양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파악 및 요청 ○ 선박재난의 경우 상황파악 및 반장 보고(정보센터)
현장지원반	반장 : 항만물류과장 반원 : 소속직원 8명 관공선 직원	○ 현장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반장) ○ 선박,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등 방제장비 지원 ○ 사고 현장 방제 진행상황 파악 및 보고 ○ 항만내 사고 현장 선박 운항통제 및 안전 조치 ○ 외국 방제장비 등 도입 시 항만시설 사용 협조
복구지원반	반장 : 항만건설과장 반원 : 소속직원 6명	○ 방제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반장) ○ 관할 항만 및 해양시설 피해 저감 및 복구 지원 ○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 협력 ○ 오염피해 복구기관과의 업무협조
대외협력반	반장 : 항로표지과장 반원 : 소속직원 4명	○ 대외협력반 지휘, 총괄반 통보 및 본부장 보좌(반장) ○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참석결과 보고 ○ 유관기관의 사고수습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 ○ 인명피해시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행정지원반	반장 : 운영지원과장 반원 : 소속직원 4명	○ 행정지원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반장) ○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지원(재정, 물품, 인원 등) ○ 언론기관 취재 협조,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총괄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과 연계하여 대응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시·도, 시·군·구)

○ 구성



*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

○ 반별 주요업무

기 능	주요 업무
① 재난상황관리	○ 재난상황 파악·전파 및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처계획 수립보고 등
② 긴급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등
③ 긴급 통신지원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 시 통신두절 상황관리 등
④ 시설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등
⑤ 에너지기능복구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 상황 파악 ○ 피해 발생지역 광역 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등
⑥ 재난자원 지원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부족지역 파악·지원 등
⑦ 교통대책	○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상황 파악 관리 ○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등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등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현황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지도 확인 등
⑩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등
⑪ 사회질서유지	○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등
⑫ 수색·구조·구급	○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필요신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⑬ 재난수습홍보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등

제2장 위기대응 조치

제1절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2.1.1 관심(Blue)

(가) 징후 및 기관의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재난가능성 예측) - 대형유조선 충돌·침몰·좌초사고 및 해양시설 파손 ○ 국내 내습이 가능한 태풍 또는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해양수산부	○ 대규모 해양환경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확인 ○ 위기징후 감시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양식장 현황 파악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의 해류등 기상 확인
해양경찰청	○ 상황센터 24시간 운영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수립·시행 ○ 해양오염 전문방제교육 및 민관합동훈련 실시 ○ 해양오염 방지·방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국가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방제장비 등 확충 ○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증진 ○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정보 관리 및 관련 기관에 제공 ○ 지휘·통신망 및 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전파체계 구축 ○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확보 ○ 해양시설의 현황·이력 정보관리 ○ 비상연락 체계 정비(유관기관, 민간 포함)
지자체	○ 해안방제 지원체제 구축 ○ 소속공무원의 방제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해안오염방제를 위한 기자재 확보 ○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보호구 등 확보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해양환경공단	○ 방제선·방제장비·자재 확보 및 배치 ○ 해양오염 전문방제교육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방제교육·훈련
항만공사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나)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재난상황 접수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징후)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신고·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해양경찰청(상황센터)은 유출량 추정·유출성분·유출범위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에 전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은 해양오염상황 접수 시 해양환경정책과 및 유관기관 초기상황 전파
 - 전파대상 : 해양환경정책과, 지방해양수산청(상황실) 등 부내 관련 부서 및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정원, 총리실, 지방자치단체(상황실), 해양환경공단(상황실) 등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 해양환경정책과는 재난상황 보고·전파
 - 보고대상 : 장·차관 및 유관기관 등
- ※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유·무선(SNS 포함)으로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필요시)

☐ 회의소집(필요시)

- 해양경찰서 및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공단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및 확산할 여지가 없는 자체 방제 가능 사고에 대하여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생략

※ 해양오염사고가 타 지역으로 확산 될 경우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재난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등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토대로 재난상황 평가 후, 방제선 동원 등 대응방안 수립·시행

☐ 위기정보 발령

- 해양오염사고가 인근 지자체등으로 확산 되는 경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통보하고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대응과)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등 유관기관에 사고 상황 통보

위기정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사고 대응체계 점검

-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요원을 확인하고, 부재시 대리근무자 편성

- 출동 인원·장비 대응태세 점검
 - 해양경찰청은 초동방제조치를 위하여 방제선 등 방제세력에 대하여 출동준비 태세 구축 및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에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기관별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수집

☐ 사업장 해양오염물질 유출실태 점검

-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난상황 발생사업장에 대한 해양오염 유발 기름 등의 유출 실태 점검(지방해양수산청)
- 관할지역내 해양오염 유발 기름 등의 배출 가능업체의 관리강화 협조 요청 공문 발송(지방해양수산청)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재난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2.1.2 주의(Yellow)

(가) 징후 및 기관의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 기름유출 사고발생(재난가능성 출현) ○ 국내 내습 태풍 예비특보, 태풍주의보 발령
해양수산부	○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 해상교통상황 모니터링 ○ 위기징후 평가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양식장 등 모니터링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해류 등 기상상태 확인
해양경찰청	○ 방제대책본부 등 국가방제체제 구축 ○ 상황센터 24시간 운영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 방제 자원 등의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 ○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 체제 강화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확보 ○ 해양시설의 현황·이력 정보관리 ○ 비상연락 체계 정비(유관기관, 민간 포함)
지자체	○ 해안방제 지원체제 구축 ○ 해안오염방제를 위한 기자재 확보 ○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보호구 등 확보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제 구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필요시)
해양환경공단	○ 방제선·방제장비·자재 확보 및 배치 ○ 방제선 등 출동 및 방제작업
항만공사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나)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재난상황 접수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징후)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신고·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해양경찰청(상황센터)은 유출량 추정·유출성분·유출범위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에 보고·전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은 해양오염상황 접수 시 해양환경정책과 및 유관기관 초기상황 전파
 - 전파대상 : 해양환경정책과, 지방해양수산청(상황실) 등 부내 관련부서 및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정원, 총리실,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상황실), 해양환경공단(상황실) 등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 해양환경정책과는 위기상황 보고·전파
 - 보고대상 : 장·차관 및 유관기관 등

※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유·무선(SNS 포함)으로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필요시)

☐ 회의소집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해양경찰청(상황센터)의 위기경보 발령 요청시에는 즉시 발령하거나,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는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긴급상황시에는 유·무선(SNS 포함) 및 서면회의 가능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등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토대로 위기상황 평가 후, 방제선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

☐ 회의결과 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중앙안전상황실, 사회재난대응과) 등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통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사고 대응체계 점검 및 초동조치

-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요원을 확인하고, 부재시 대리근무자 편성

-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에 비상연락망 점검 및 자체 대비태세 점검 요청공문 발송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선 등 방제 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방제조치 시행
- 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기상황 발생사업장에 대한 해양오염 유발 기름유출 실태 점검 및 관할지역내 해양오염 유발 기름배출 가능업체의 관리강화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 통보

- 해양경찰청(상황센터), 지방자치단체(상황실) 및 해양환경공단(상황실)은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사항에 대하여 매일 2회(06시, 18시 기준) 해양환경정책과 또는 중앙사고 수습본부(설치시)에 보고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수집

- 지방해양수산청(상황실)은 및 해양경찰서(지역방제대책본부 상황 센터)는 해당사업장 또는 해당지역에 대한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위험정보를 수집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시)에 보고(통보)

위기정보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2.1.3 경계(Orange)

(가) 징후 및 기관의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 유출된 기름 어장, 양식장 및 연안지역까지 확산 우려 (재난가능성 농후) ○ 국내 내습 태풍 경보 발령
해양수산부	○ 위기징후 평가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사고지역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제 구축 또는 긴급대응반 등 실·국별 간소화된 조직 운영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 지원 ○ 정부의 대처 노력 대국민 홍보 지속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응 및 조치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양식장 등 피해 현황 파악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해류 등 기상상황 확인 제공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 위기징후의 지속적 감시 및 전파 ○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체제 유지 ○ 긴급방제장비의 동원 및 방제 인력 운용 체제 유지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확보 ○ 해양시설의 현황·이력 정보관리 ○ 비상연락 체계 정비(유관기관, 민간 포함)
지자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 추진 ○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가동 준비
해양환경공단	○ 방제선·방제장비·자재 확보 및 배치 ○ 방제선 등 출동 및 방제작업
항만공사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나)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징후)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신고·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해양경찰청(상황센터)는 유출량 추정·유출성분·유출범위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에 보고·전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은 해양오염상황 접수 시 해양환경정책과 및 유관기관 초기상황 전파
 - 전파대상 : 해양환경정책과, 지방해양수산청(상황실) 등 부내 관련 부서 및 청와대,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과), 국정원, 총리실,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상황실), 해양환경공단(상황실)등 유관 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시)는 중앙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전파한 상황을 보고 및 전파
 - 보고대상 : 장·차관,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 전파대상 :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등
- ※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유·무선(SNS 포함)으로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소집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해양경찰청(상황센터)의 위기경보 발령 요청시에는 즉시 발령하거나,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운영(긴급상황시에는 유선 및 서면회의 가능)

☐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등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토대로 위기상황 평가 후, 방제선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

☐ 회의결과 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대응과) 등 유관기관에 위기 경보 발령 통보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포함) 설치 준비

☐ 지방해양수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현장 수습활동

- ☐ 긴급 구조 활동(경찰, 소방)
- ☐ 초동조치
 - 방제선, 유회수기 및 오일펜스 등 방제기자재를 동원하여 초동 방제조치 시행
 - 사고선박 주변, 발전소 등 환경민감지역에 오일펜스 등의 설치를 통한 기름 유출·유입 방지
 - 해양경찰청(상황센터), 지방자치단체(상황실) 및 해양환경공단(상황실)은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사항에 대하여 매일 2회(06시, 18시 기준) 해양환경정책과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시)에 보고
- ☐ 현장통제, 경계구역 선정 등 통행제한 결정
- ☐ 사고지역 초기 오염도 조사 및 방제기법 선정

위기정보 해제 및 후속조치

-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 사고지역 복구[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사업장]
- ☐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 ☐ 상황종료 판단
- ☐ 위기정보 단계조정·해제결정 및 전파
- ☐ 사고지역 복구를 위한 비상지원본부(지자체) 및 현장지휘소(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인계
-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2.1.4 심각(Red)

(가) 징후 및 기관의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지속성 유류 100kℓ, 비지속성 유류 300kℓ 이상 유출) 및 유출된 기름으로 해안가 100km이상 오염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양수산부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중앙(지방)사고수습본부 운영 ○ 위기상황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응 및 조치 ○ 현장상황 및 위기 진행 관련 총괄·조정 및 언론 대응 ○ 사고해역 해상통제 실시 및 방제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검토 및 요청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양식장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 ○ 해양오염사고 인근해역 해류조사 자료 제공
해양경찰청	○ 방제대책본부 운영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 사고 초동조치(유출량 파악, 유출방지,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등)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전파체계 유지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동원태세 유지 ○ 해양시설의 현황·이력 정보관리 ○ 비상연락 체계 정비(유관기관, 민간 포함)
지자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현장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관할 해안의 해안방제조치 ○ 주민 대피명령, 육상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 해안방제작업자 관리 및 수거된 기름 등 폐기물 처리 ○ 해안방제 종료 선언(필요시 협의체 구성)
해양환경공단	○ 해양경찰청, 지자체 요청·지시에 따른 방제조치 지원 ○ 지자체의 해안방제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지원 및 민간방제조직의 방제조치 지도 ○ 해상·해안 방제작업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지원
항만공사	○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항만시설(관리·운영)방제 실시 ○ 항만시설(관리·운영) 방제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나)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재난상황 접수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징후)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신고·접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해양경찰청(상황센터)는 유출량 추정·유출성분·유출범위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에 보고·전파
 -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은 해양오염상황 접수 시 해양환경정책과 및 유관기관에 초기상황 전파
 - 전파대상 : 해양환경정책과, 지방해양수산청(상황실) 등 부내 관련부서 및 청와대,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과), 국정원, 총리실,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상황실), 해양환경공단(상황실) 등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전파한 상황을 보고 및 전파
 - 보고대상 : 장·차관,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 전파대상 :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등
- ※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유·무선(SNS 포함)으로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회의소집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해양경찰청(상황센터)로 부터 위기 정보 발령의 요청시에는 즉시 발령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운영(긴급상황시에는 유선 및 서면 회의 가능)

☐ 재난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등 해양경찰청의 상황전파를 토대로 위기상황 평가 후, 방제선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

☐ 회의결과 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는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대응과) 등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통보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종합상황실 운영)

-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협력관 1명씩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파견·지원

- ☐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운영(상황센터 운영)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협력관 1명씩 방제 대책본부에 파견·지원
- ☐ 지방해양수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해양경찰서 및 해양환경공단 소속기관에서는 협력관 1명씩 지역 사고수습본부에 파견 지원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 초동조치 및 보고
 - 해양경찰청(상황센터), 지방자치단체(상황실) 및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오염사고 방제조치사항에 대하여 매일 2회(06시, 18시 기준) 중앙 사고수습본부 및 해양환경정책과에 보고(전파)

현장 수습활동

- ☐ 긴급 구조 활동(해양경찰서, 소방)
- ☐ 방제조치
 - 방제선, 유회수기 및 오일펜스 등 방제기자재를 동원하여 초동 방제조치 시행
 - 사고선박 주변, 발전소 등 환경민감지역에 오일펜스 등의 설치를 통한 기름 유출·유입 방지
 - 관할 구역별 방제조치 시행(해양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등)

- ☐ 현장통제, 경계구역 선정 등 통행제한 결정
- ☐ 사고지역 초기 오염도 조사 및 방제기법 선정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 사고지역 복구(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사업장)
- ☐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 ☐ 상황종료 판단
- ☐ 위기경보 단계조정·해제결정 및 전파
- ☐ 사고지역 복구를 위한 비상지원본부(지자체) 및 현장지휘소(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인계
-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제2절 상황[가정]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0000년 0월 0일 00:00
- 장 소 : 00항내
- 사고개요 : 유조선 △△호가 00항으로 입항 중 운항부주의로 화물선 ▲▲호와 충돌하여 적재중인 원유가 유출

☐ 오염범위

- 오염물질 : 원유 약 1,200kl 유출
- 해상 : 사고선박 주위 300m × 3km 흑색 유막 형성하고 있으며, 해안방향으로 이동 확산 중
- 해안 : 000군 해안 약40km에 기름유입 진행 중 양식장·어장, 000군 관내 양식장 약250ha 정도 오염

☐ 선체상태

- 선체상태 : 좌현 2, 3, 4번 탱크 파손
- 피해선은 항계내 항로상에 침몰되어 입출항 선박에게 운항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있음
- 가해선은 선체이상 없으며 자력항해 가능

☐ 피해사항

- 해수유입 시설의 피해발생 우려
 - 시설개소 : 00소금(주), 00원자력발전소, 00화력발전소 등 3개소
- 사고 인근해역에 서식하는 가마우지, 청둥오리, 갈매기, 기타해안 서식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및 추가 파괴우려

☐ 현지기상

- 파고 2m, 시정 3km, 풍속 13~16m/s, 폭풍주의보 발효

☐ 언론보도

- 내용 : 0. 0. 00:00 연합뉴스, YTN 보도 “00항 00 정유부두 대형기름유출”

제3절 조치 목록 및 단계별 조치내용

2.3.1 조치목록

구 분	조치사항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상황접수 단 계	○ 오염사고 상황 접수 (해양경찰청, 지방청-상황실 등) ○ 상황보고 및 관련부서 전파 ○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 오염사고 상황 접수 (신고자, 해양경찰서-관제실 등) ○ 상황보고 및 관련부서 전파 ○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 담당직원 현장 출동조치
초동조치 단 계	○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현장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 세부상황 파악, 보고·전파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 구성·운영 ○ 가용 방제자원 지원 요청	○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현장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 세부상황 파악, 보고·전파 ○ 방제선·장비·자재·약제 등 현장 지원 조치 ○ 언론사 현장 취재활동 지원
사고수습 활동단계	○ 필요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 ○ 방제활동 지원 대책 강구 ○ 피해보상 지원 대책 강구 ○ 민간 및 국제협력 지원 ○ 긴급해양오염 영향조사 실시 ○ 해수욕장 등 복원 지원	○ 사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 처리 행정조치 및 협력 ○ 관할 항만 또는 인근해역입 출항 선박 안전 관리 ○ 관할 항만시설 오염방제 ○ 방제대책본부 회의 참석 ○ 긴급해양오염 영향조사 등 협력
복원단계	○ 해양오염 영향조사 지속 실시 ○ 생태계 등 복원대책 수립 ○ 방제 등 사고수습활동 평가	○ 해양오염 영향조사 등 협력 ○ 항만 내 침몰선박 처리

※ 사고유형, 발생장소, 기상상황, 발생시간(주, 야간) 등 방제작업제약조건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

2.3.2 단계별 조치내용

□ 상황접수·보고(전파) 및 응급조치 단계

○ 해양오염사고 신고 및 응급조치(민간)

- 최초발견자 및 관계자는 즉시 112 또는 119에 긴급 신고
- 신고 후 해양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가능한 범위내 응급조치

○ 해양오염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

- 보고 : 해양경찰청(상황센터) → 국정상황실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청와대),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 전파 : 해양경찰청(상황센터, 관제센터),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 관계부처, 시·군 상황실, 해양환경공단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 긴급출동(지방해양수산청)

- 사고해역 관할 지방청 관공선 및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출동

○ 현장 상황조사 및 응급조치(지방해양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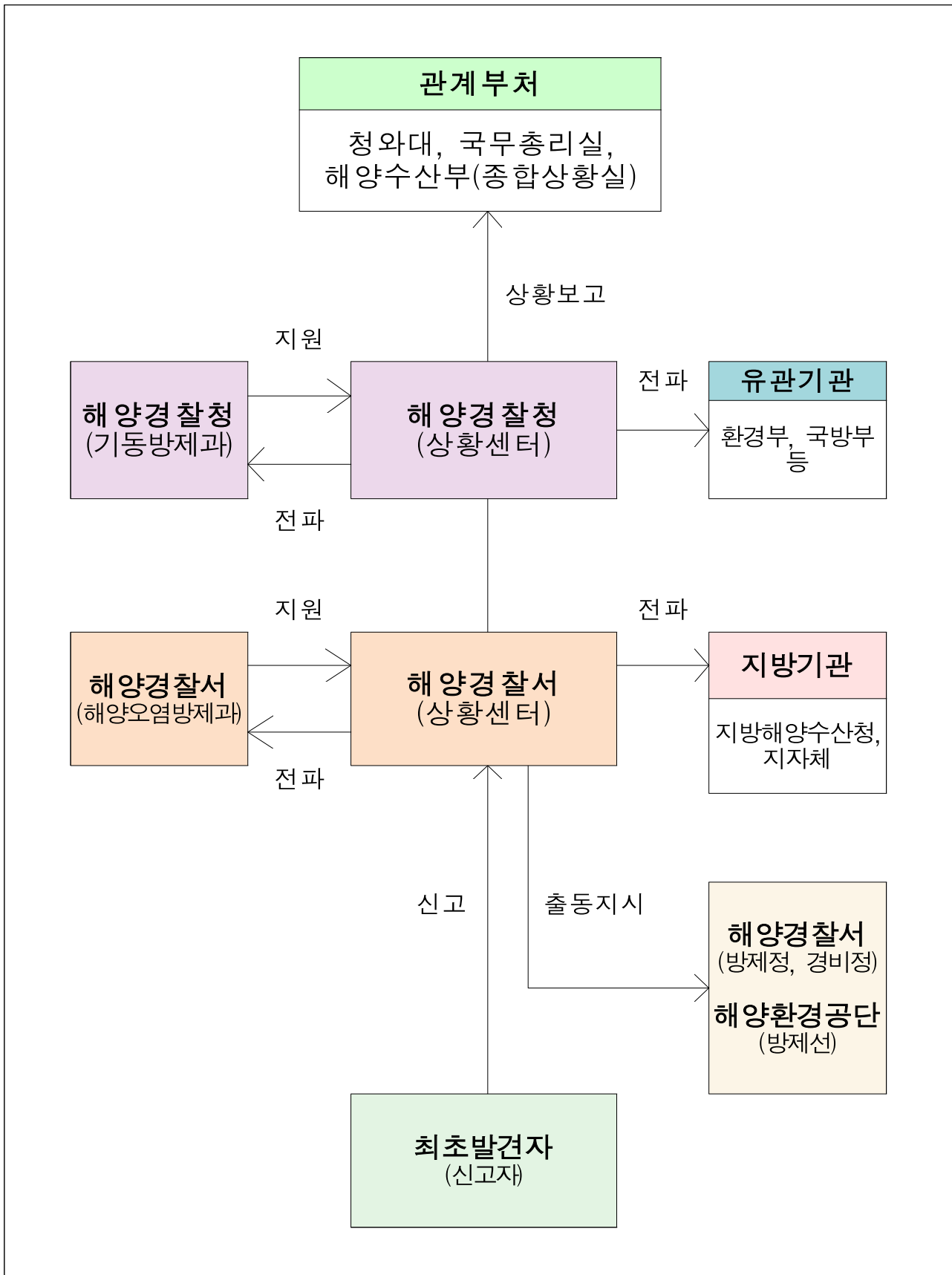
- 현장출동직원, 선주·해양시설 소유자 등으로부터 현장상황 파악
· 사고피해상황(인명 등), 유출량, 오염범위 등 파악 가능한 부분
- 인명구조, 유출구 봉쇄, 밸브폐쇄, 유류이송 등 응급조치 지원(해경협조)

○ 비상소집(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 해수부 : 해양환경정책과, 해사안전관리과 등 필요부서
- 지방청 : 해양수산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 해양환경공단 : 방제대응팀, 해당지사 등

○ 상황발생 접수·보고단계부터 상황 기록 유지

○ 상황발생 접수·보고체계



□ 초동조치 단계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필요시) 및 위기경보단계 설정

- 경계단계 발령시 필요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검토를 건의
- 심각단계 발령시 중수본을 가동하고 중대본 설치를 건의
- 중수본 설치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설치를 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해양수산부)

- 총괄반, 상황반, 언론지원반, 현장지원반, 복구대책반, 보상지원반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
- 24시간 운영 및 2교대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소관 임무 수행
 - ※ 사고 수습상황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사고수습업무의 총괄 지휘 및 종합보고, 방제·보상·피해주민 지원, 생태계 복원 등 사고수습 업무 수행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요청

○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지방해양수산청)

- 총괄반, 상황반, 현장지원반, 복구대책반, 대외협력반, 행정지원반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
- 24시간 운영 및 2교대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소관 임무 수행
 - ※ 사고 수습상황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사고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방제작업 및 언론사 취재 지원, 방제책임 구역 방제 조치 등 임무 수행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의 구성

- 대변인실 중심의 '위기대응 홍보반'과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의 지원 하에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팀'과 '법률지원팀'으로 구성·운영

□ 사고수습활동 단계

○ 현장 방제상황에 따른 방제활동 지원(해양수산부)

- 지속적·정기적 현장상황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전파
- 현장 방제작업 진행상황 및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자원(인력·장비) 동원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등 협조요청

※ 기관대응수칙 IV. 관계기관 주요임무 참고

○ 국제협력을 통한 방제활동 지원

- 해양경찰청의 요청 등으로 인접국가 방제자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한 지원·협력 요청

※ 대상국가 : NOWPAP 회원국 및 방제장비 보유국

※ 방제자원 : 방제선, 유처리제 살포용 항공기, 선박구난장비, 유흡착재 등

- 원활한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외교부 등)별 협조요청

※ 기관별 역할은 기관대응수칙 IV. 관계기관 주요임무 참고

- NOWPAP 회원국 및 IMO 등에 작업현황 통보(필요시)

○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 신고한 피해상황(지역·피해자 수·피해내용 등) 파악
- 피해정도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 생계안정자금 확보 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피해주민 보상청구를 위한 지원대책 추진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에 사고발생 통보(유조선 관련 사고 등 필요시)
- 보상주체(선주·보험사, IOPC Funds 등)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주민(단체)에게 국제기금 배·보상 청구 절차 및 사정기준 안내
- 피해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특별법 제정 검토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선박 또는 해양 시설 소유자에게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지시

※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 연료유, 중유, 윤활유) 및 폐유 100㎏ 이상 유출

□ 복원 단계(사후조치)

○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 영향조사 결과평가 및 복원계획 심의
- ※ 관계부처(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종합복원계획 수립
- 생태계 복원계획에 따라 유관기관별 연차적 복원사업 추진
- 해양오염영향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침몰선박의 처리

-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에 따른 침몰선박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위해도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역관리청에 지시(해양수산부→해역관리청)
- 침몰선박의 위해도 평가,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박의 소유주로 하여금 침몰선박의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인양, 잔존유 제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고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시(해역관리청→선주)
- 구난업체의 선체처리 안전작업 행정절차 및 지도 등
- 침몰선박의 위해도 저감조치를 위한 처리팀 구성(해역관리청, 필요시)
※ 선주(보험사), 해역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보완

-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 실행결과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재난대응 결과를 검토 및 분석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보완
-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 사고수습활동을 기술하고 평가·분석한 백서발간

제4절 주요 핵심사항 조치내용

2.4.1 피해주민 지원 및 보상

□ 중 점

- 신속한 생계지원을 통한 피해주민 생활안정 도모
- 신속·적정한 피해 배·보상 수급을 위한 지원추진
- 피해지역 자연환경 복원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추진

□ 관련법규 및 지원체계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지원체계

<시기별>	<추진주체>	<주요활동>	<주안점>
대응초기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피해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재난 사태 포함) 선포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피해현황 파악, 생계자금 배분기준 확립
중 기	해양수산부 피해지자체	신속 및 적정 보상 수급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	대 보상주체 및 피해주민·지역 활동
장 기	환경부, 해양수산부, 피해지자체	해양환경복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영향 분석

□ 세부 활동내용

- 신속한 주민 생계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피해상황(지역·정도·피해자 수)에 대한 신속한 파악
 - 피해정도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생계안정자금 확보 필요성 여부 판단 및 지원
 -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배분·집행
-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한 보상주체와의 협력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에 사고발생 통보(관련 사고의 경우)
 - 사고선박 및 시설의 소유주, 보험사, IOPC Funds(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 등과의 연락 및 협력체계 마련
 - 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제작업 인건비 조기지급 방안 강구
 - 방제업체에 유류오염구제자금 등을 활용한 용자 지원
 - 특별법 등을 통한 대지급 가능 시 방제비 소요예산을 확보 및 선지급 후 피해 배·보상 주체에 대위권 행사
 - 보상주체의 현장사무소 개소, 정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선박사고인 경우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배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주측 등과 협의 추진
 - 대규모 피해로 인한 특별법 제정 및 이에 근거한 대(선)지급이 진행되는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 추진

○ 피해지역의 안정 및 적정 보상청구를 위한 조치

- 피해주민 등에 피해 배·보상 청구절차 및 사정기준 안내
- 피해자단체 구성현황 및 자체 피해 조사활동 추진현황 파악
- 피해 주민단체에 대한 대정부 협조창구 마련 및 의견수렴 실시
-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정부(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조방안 강구

○ 피해규모, 범위에 따른 특별법 등 지원 필요성 검토(국제기금 활용시)

- 국제기금 사정액의 보상한도 초과 시 정부가 주도하는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 필요성 검토
- 국제기금 등의 사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속 배·보상을 위한 대지급 추진 필요성 검토
- 국제기금 배·보상 외의 국가차원의 지원을 계획하는 경우 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
- 배·보상 절차 정부 개입 시(대지급 등) 업무처리를 위한 대행 금융기관 선정, 활용

○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한 복원 추진

-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의 추진 및 독려(방송매체활용 및 각종 행사 개최 등)
- 중앙정부차원의 경제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총괄)
- 유류오염 피해지역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
- 피해주민 건강검진 등 관련 대책

○ 일원화된 언론대응 및 신속·정확한 홍보로 대국민 신뢰확보

- 재난방송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 언론·홍보 대응팀 가동 및 취재활동 지원
- 비상홍보센터 가동
- 현장지휘본부와 연계된 현장 브리핑 시스템 구축 운영
- 對언론 정례 브리핑 실시
- 소방청에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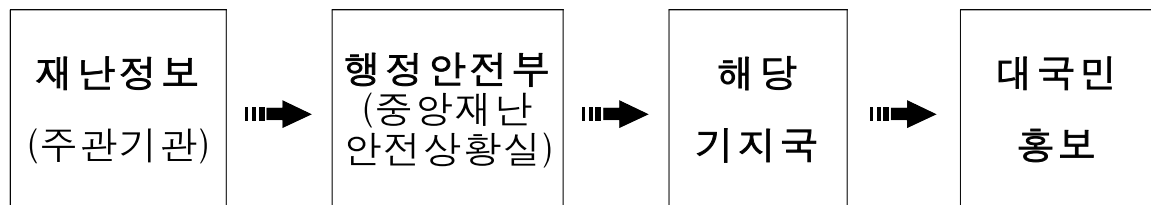
<참고>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 체계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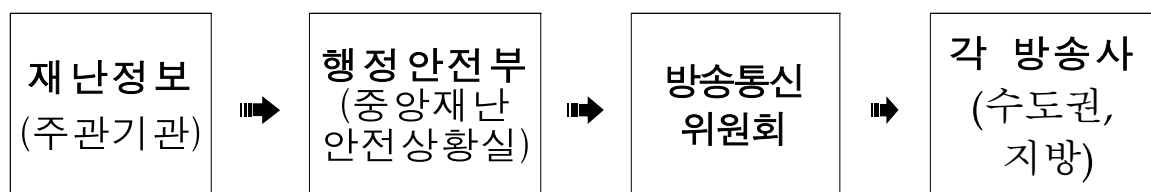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요청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재난정보 주관기관에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세지 전달

□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국무총리실	○ 부처간 피해지원 대책 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주민지원(생계안정자금 등) 결정 등
중앙부처 공통	○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발굴 및 지원
해양수산부 (보상지원반)	○ 생계안정자금 배분방법 결정 및 지자체 별 배분 협조 ○ 피해보상주체에 대한 협의시 정부입장 대표 ○ 피해보상 지원 대응 총괄 ○ 피해주민 지원정책 수립·집행 총괄(관련 입법 포함) ○ 대 사법부 및 입법부 협력 총괄 ○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 피해지역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 ○ 조업제한 및 조업재개
환경부	○ 피해지역 주민 단·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 피해지역 환경복원사업 추진 ○ 피해지역 방제 인력 동원 및 인건비 등 지원
기획재정부	○ 긴급방제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자금 등 예비비 지원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예산 지원
외교부	○ 국제기금 및 회원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정 및 교섭
행정안전부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 ○ 생계안정자금 배분방법 결정 및 지자체별 배분
보건복지부	○ 피해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의 유류노출에 따른 건강 피해 검진 실시 ○ 피해지역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유예, 감면 지원
해양경찰청	○ 방제(주민 인건비 포함)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	○ 생계안정자금 주민 배분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 방제작업 관련 주민 동원(참여) 및 신속한 인건비 지급

□ 긴급 지원체계의 신속 가동

구 분	내 용
긴급 구호	○ 인력 및 장비·물자의 긴급 사용, 자원봉사자 투입
소방·위험물	○ 화재진압, 위험물 보관시설 등의 긴급점검 및 수송통제
경비 및 치안	○ 피해지역의 출입 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대피	○ 대피로의 확보 및 지정, 대피소 대피유도 및 관리
이재민 대책	○ 수용시설로의 대피 및 관리
긴급 구조구급	○ 긴급구조 활동,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긴급 의료구호	○ 현장 의료구호소 및 후방 의료기관 설치·운영, 부상자 후송, 비축 의약품 및 의료 기자재의 사용
식수·생필품 등	○ 비상급수, 생필품의 확보, 수송 및 공급
교통대책 및 긴급수송	○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전세· 시내·마을버스 등 투입 및 순환·연장운행 실시 ○ 일반 차량의 통제, 긴급 수송로 확보 및 차량 운용 ○ 교통통제 상황발생시 시설물 관리청과 경찰청간 협의 통제
청소·방역	○ 쓰레기 분뇨 및 지장물의 제거, 처리
사망자 대책	○ 지정 장소에 사체 안치, 사망자 확인 및 유족 인계
실종자 대책	○ 실종신고 접수, 수색 및 확인
라이프 라인의 확보	○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주요시설 광역적 지원체제 가동 및 단계별 응급복구 실시
학생 안전대책	○ 학교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
홍보대책	○ 방송사, 재난방송, SMS 등 신속전파 ○ 광역 시·도별로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2.4.2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복원

□ 중 점

- 유류오염 피해의 규모·범위·기간을 증명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기초 자료 확보
-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복원 계획 마련

□ 업무수행 및 지원체계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 제78조, 제79조
- 지원체계

<시기별>	<추진주체>	<주요활동>	<주안점>
대응초기	해양수산부	○ 조사 기관 선정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 IOPC Funds에 조사 실시 통보(필요시)	○ 위원회 심의 및 대상지역 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력
↓			
중 기	해양수산부	○ 조사결과 중간발표 ○ 조사계획 보완 ○ 조사결과 최종발표	○ 대국민 공개 ○ 어업재개 관련 협조
↓			
장 기	해양수산부	○ 복원계획 수립 ○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중장기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포함

□ 세부 활동내용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조사의무자가 기간내 조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대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 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 실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종류		배출량
폐기물	1.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 화합물	100kg 이상
	2.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00kg 이상
	3.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 합성수지, 폐 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 산, 폐 알칼리	20,000kg 이상
	4.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20,000kg 이상
	5. 그 밖의 폐기물	30,000kg 이상
기름 중 지속성유(원유·연료유·중유·윤활유)와 폐유		유분총량이 100kl 이상
유해액체물질	1.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10,000 l 이상
	2.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류 물질	25,000 l 이상
	3.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Z류 물질	25,000 l 이상
	4.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10 l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제3항, 동시행령 제58조제3항)

* 해양오염영향조사 의무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사의무자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대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지속성 유류가 200kl 유출된 경우 등) *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 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 분야 및 항목
(해양환경관리법 제7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분야	조사항목
자연 환경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생활 환경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사회·경제 환경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절차

- 실시 프로세스



※ 정하는 기간이내 조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조사 실시

- 주민의 의견 수렴(설명회 또는 공청회)

- 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조사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설명회 또는 공청회)
-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때는 미리 해양오염영향조사 초안을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조치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 조치

○ 유관기관, 보상주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 유관기관 협력 >

-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부처(환경부 등)의 조사와 연계

※ 조사의 내용·방법, 항목 및 범위 조율, 자료 공유 등

- 오염 및 방제 상황을 반영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에 통보(필요시)

< 보상주체와의 협력 >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주(혹은 대리인), 보험사, IOPC Fund 책임자(필요시) 등에게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통보 및 협의

* 조사기관, 조사의 기간·내용·방법·항목 등

<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력 >

- 피해지역 주민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해양오염영향 조사의 내용·항목, 방법 등에 대해 설명
- 해양오염영향조사에 대한 지자체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에 반영
- 유류 피해의 규모·범위·기간 등에 관한 과학적 조사결과가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 어업재개 등과 관련한 수산물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협조체계 마련

○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조치

- 피해규모, 범위에 따른 향후 조사 재원 검토
 - 생태계 모니터링·복원 등 국가차원의 장기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
- 피해지역의 해양환경관리 및 생태계복원 추진
 -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복원대책 수립·시행
 - 중장기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용역 실시
 -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와 연동한 복원계획의 보완 및 시행

□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해양수산부 (복구대책반)	○ 해양오염영향조사 총괄, 관련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관계부처 소관 조사의 구역·내용·항목 등 조정 ○ 조사결과(중간결과, 최종결과) 대외 발표 ○ 해양 환경 및 생태계복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예산 확보 ○ 수산물 및 어류자원 영향조사 수행 ○ 어패류 등 수산물 섭취에 따른 위해성 및 조업재개 관련 평가, 오염수산물 등 유통통제 수행 ○ 어장 및 수산자원 회복 관련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	○ 긴급방제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자금 등 예비비 지원 ○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지원 ○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 관련 예산 지원
환경부	○ 육상 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수행 ○ 육상 환경 및 생태계 관련 모니터링 및 생태계복원 관련 조사 수행
외교부	○ 국제기금 및 회원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정 및 교섭
보건복지부	○ 피해주민 건강 관련 실태 조사 수행 및 대책 마련
해양경찰청	○ 해안오염조사평가(SCAT) 수행 및 방제정보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	○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안오염조사평가(SCAT) 지원

제5절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임무 · 역할

2.5.1 중앙사고수습본부(해양수산부) 각 반별 조치사항

2.5.1.1 총괄반(해양환경정책과)

□ 사고접수/초동조치 단계

○ 사고발생 상황 접수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 해양환경정책과

○ 사고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 해양환경정책과장/해양환경정책관/해양정책실장/차관 · 장관 보고
- 해당부서 및 관련부처(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전파

○ 비상소집

- 사고발생 상황보고 후 즉시 직원 비상소집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운영 등 총괄 지휘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또는 회의실에 설치
- 사고수습 추진상황 종합 보고(대내 · 외)
- 해양오염상황 및 조치사항 기록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수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현장지원반 파견 및 사무실 확보 · 운영

- 해양환경정책과장 및 소속직원, 해양환경공단 소속 파견직원으로 구성
- 사고해역 관할 해역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군) 또는 수협 등 협조로 현장지원반 사무실 확보
- 사고수습과 관련한 현장지원센터로 운영

○ 가용 방제자원 파악 및 지원 대책 강구

- 지방해양수산청 보유 가용 방제선박, 장비, 자재, 약제 파악
- 오염사고 확산범위를 모니터링 및 연계된 방제지원대책 강구

○ 현장 상황 파악 및 초동조치 협력

- 정기적으로 세부적인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및 전파
- 초동방제 협력 조치(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지시)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 민감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긴급 보호 요청

□ 사고수습 활동단계

○ 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 및 국제협력

- 해양경찰청으로부터의 요청 등으로 인접국가 방제자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한 지원·협력 요청
- 외국 방제장비 등 도입시 공항·항만 사용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 방제장비·자재 등에 대한 검량·검수·검사는 해양경찰청 담당
- 민간 해양환경단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방제지원

○ 사고 수습 지원 및 각종 대책회의 주관

- 방제활동 및 복구·보상·현장 지원반 활동 지원
- 사고수습관련 정부회의 등 각종 대책회의 참석

□ 방제종료 및 복원단계

○ 사고수습결과에 대한 종합보고

2.5.1.2 상황반(해사안전관리과장)

□ 사고접수/초동조치 단계

- 사고발생 상황 접수
 - 해양경찰청·지방해양수산청 ⇒ 종합상황실
 - 사고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종합상황실)
 - 해양환경정책과장/해양환경정책관/해양정책실장/차관·장관 보고
 - 해당부서 및 관련부처(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전파
 - 현장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협력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방제대책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 정기적으로 세부적인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및 전파
 - 사고선박의 유출공 봉쇄, 화물이적 등 응급조치 협력
- ※ 선박사고(충돌·좌초·침몰 등)로 인한 오염사고 시

□ 사고수습 활동단계

- 해경 등 유관기관 협조·전파체제 유지
 - 해양경찰청·지방해양수산청 ⇒ 종합상황실
- 사고 선박의 구난 협력 및 지원(필요시)
 - 침몰선박의 인양 및 처리, 사고의 수리 및 이동 등

□ 방제종료 및 복원단계

- 해양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

2.5.1.3 언론지원반(홍보담당관)

□ 사고접수/초동조치 단계

- 사고발생 상황 접수
 - 종합상황실 ⇒ 홍보담당관
- 사고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 홍보담당관 ⇒ 대변인, 대변인실 직원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입각한 운영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 대변인 지정 및 공보지원반 구성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점검 등 여론 모니터링

□ 사고수습 활동단계

- 사고수습상황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 오염확산 방지, 방제종료, 피해주민 지원 및 보상 추진, 해양오염 영향조사, 생태계 복원 등
- ※ 오염방제부문은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실시
- 온라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 방제종료 및 복원단계

- 사고수습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자료 제공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보완

2.5.1.4 현장지원반(해양보전과장)

□ 사고접수/초동조치 단계

- 사고발생 상황 접수
 - 종합상황실 ⇒ 해양환경정책과
- 사고현장에 현장지원반 지원근무 개시
 -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장 및 소속직원, 해양환경공단 직원으로 구성
 - ※ 지원반 구성 시 해양수산직렬(선박직류), 환경직렬을 포함
- 오염 피해 현황 및 초동조치 상황 등 파악·보고
- 주요인사 사고해역 방문 시 안내
- 지역재난대책본부, 지역방제대책본부 등과 협력

□ 사고수습 활동단계

- 주요인사 사고현장 방문 시 안내
- 현장 사고수습상황 및 여론동향 파악·보고
 - ※ 방제현황, 주요 조치사항, 주요인사 방문, 주요회의, 언론 취재 등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피해보상 절차 및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 안내
- 방제활동 지원 사항 및 대책 파악 보고, 방제자재 지원
- 지역재난대책본부, 지역방제대책본부 등과 협력 유지

□ 방제종료 및 복원단계

- 현장지원반 운영 종료, 소관업무는 해양환경정책과 또는 사고수습관련 T/F로 이관

2.5.1.5 복구대책반(해양생태과장)

□ 사고접수/초동조치단계

- 해양오염이 유발된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에 해양오염영향 조사 실시 지시
- 3개월 이내 조사 불이행, 조사 기준량의 2배 이상 유출, 양식시설 등 대량피해 예상 시 해양수산부가 별도 조사 검토

□ 사고수습 활동단계

-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조사기관 선정
 - 유관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
 -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의 발표(브리핑)·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 피해지역 해수욕장 등 복원 지원
 - 연안정비사업 등 가용재원을 활용 해수욕장 복원 지원
 -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준 검토

□ 방제종료 및 복원단계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복원대책 수립·시행
- 중장기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용역 실시
-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복원계획 보완 및 시행

2.5.1.6 보상지원반(해사안전정책과장)

□ 사고수습 활동단계

-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생계비 지원
 - 피해정도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생계안정자금 확보 필요성 여부 판단 및 지원
 -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배분·집행
- 피해주민의 신속·적정한 보상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 주민 생계수단이 되는 방제인건비 조기 지급방안 강구
 - 보상주체와의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주민 등에 피해 배·보상 청구절차 및 사정기준 안내 등 보상 지원
 - 피해규모, 범위에 따른 특별법제 지원 필요성 검토
-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한 복원 추진
 - 매스미디어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한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 중앙정부차원의 경제 활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총괄)
 - 피해주민 건강검진 등 관련 대책

□ 방제종료 및 복원단계

- 국제기금 배·보상 외의 국가차원의 지원을 계획하는 경우 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 및 지원
- 배·보상 절차 정부 개입 시(대지급 등)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중장기적으로 한시 조직(T/F)을 운영하여 보상 지원 대처

2.5.2 지역사고수습본부(지방해양수산청) 조치사항

□ 사고접수/초동조치단계

○ 위기발생 상황 접수(오염사고 신고인 · 해경서 → 지방해수청)

※ 신고 접수인 경우 사고개요(발생일시, 장소, 원인 등), 사고선박 제원, 유출유 확산상태 및 추정량, 기상상태 및 응급조치사항 등 확인

○ 해양오염사고 발생 보고 · 전파

- 관제센터 → 해양수산환경과 · 선원해사안전과 → 청장 및 해양수산부 해당 부서

○ 현장 응급조치

- 해양경찰서에 사고발생상황 통보

-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및 방제자재 · 약제 동원

- 현장상황(유출량 · 적재량 · 선체상태) 파악 및 응급조치

· 유출공 봉쇄, 적재유 이적, 오일펜스 설치 등 응급조치 지원(해경협조)

- 담당부서 비상소집, 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

○ 항만내 해안오염상태 조사 및 평가

○ 해양환경공단에 방제요청, 방제 우선순위 및 전략 결정

○ 사고해역 항만 입출항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대책 강구

-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청 NAVTEX를 활용, 해상통제 및 항행안전 홍보 실시 등

○ 해양오염에 민감한 항만내 주요 해양시설의 보호 조치

□ 사고수습활동단계

- 항만(해안)방제 실행계획 수립
- 해안특성과 오염상태에 적합한 방제작업 실시
 - 방제인력, 장비, 자재 배치 및 방제조치
 - 제반 방제자재의 보급 지원 및 방제자원 조정 배치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장지원반, 보상지원반 활동 지원
-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재난대책본부와의 유기적 협력
- 주기적인 현장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 방제종료 및 복원단계

- 방제현장 합동조사팀 구성 및 조사 실시
 - 지역방제대책협의회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구성
 - 현장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만(해안)방제 종료 결정
 - 수거된 폐유·폐기물의 처리
 - 항만(해안)방제 활동에 소요된 방제비용 청구
 - 항만내 침몰선박 처리(필요시)
 - 침몰선박의 위해도 저감조치(인양, 잔존유제거 등)팀 구성·운영
 - ※ 선주(보험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전문가 등
 - 침몰선박의 인양은 소유주 주도로 조속히 인양처리토록 유도하고
작업안전을 위하여 인양계획서 검토 등 관리감독 철저
 - ※선주가 인양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
- 사고수습 평가 및 종합 보고(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제3장 행정 및 협조사항

행정 및 협조사항

□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은 이 매뉴얼을 근간으로 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작성한 매뉴얼(책자)을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는 이 매뉴얼을 근간으로 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안오염 방제, 주민 생계 및 피해보상 지원,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 등을 포함하여 사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안 인접 시·군·구는 광역시·도에서 작성한 행동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은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체 기본방제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각 지사의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항만에 대한 방제실행계획을 포함한 현장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항만공사

항만공사는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록 1

[방 제 기 술]

부록 1-1

오일펜스 전장기술 Guide Line

해 상 조 건	오 일 펜 스 전 장	유 의 사 항
◦ 수심 20m이내 ◦ 조류 1knot 이하인 해역	◦ 사고선박, 시설 완전 포위 전장 ◦ 2중 설치	◦ 오일펜스 길이 40~60m 마다 앵카 1개씩 설치 ◦ 장비출입구 및 오일펜스내 작업공간 확보
◦ 해안, 부두, 암벽 해역	◦ 해안, 부두, 암벽에 오일펜스 끝단을 고정시킨 후 포위전장 ◦ 2중 설치	◦ 오일펜스 길이 40~60m 마다 앵카 1개씩 설치 ◦ 오일펜스내 작업공간 확보
◦ 조류 1knot 이상인 해역	◦ 예인, 흐름, 유도전장 등	◦ 유회수 시스템과 연계 활용 ◦ 장기간 설치시 오일펜스 지지선박 교대방안 강구

※장기간 설치시 팽창식 오일펜스는 고정식 오일펜스로 교체

부록 1-2

해양유출유 회수 및 유흡착재 사용기술 Guide Line

○ 유회수 기술 Guide Line

해 상 조 건	회 수 작 업 방 법	유 의 사 항
조류 1knot 이하 잔잔한 수면	◦ 디스크, 스크루, 브러시, 접시형 위어 스키머 등 정지형 유회수기를 포워전장한 오일펜스 내에 투입 회수작업 ◦ 브러시, 사이크로넬, 부유벨트, 트롤스키머 등 전진형 유회수기는 오일펜스 외측 투입 회수작업	◦ 유흡착재 및 유처리제 사용금지 ◦ 회수유 저장용기 동원 ◦ VOSS 또는 오일펜스와 연계한 U,V,J시스템 운영
해안, 부두 및 천해지역	◦ 디스크, 스크루, 브러시, 접시형 위어 스키머 등을 육상에 설치, 포워전장 오일펜스내 기름 회수작업 ◦ 해안, 암벽 세척작업 병행	◦ 유흡착재 및 유처리제 사용금지 ◦ 회수유 저장용기 동원
조류 1knot 이상 해역	◦ 방제선 거치 전진형 유회수기 및 트롤, 트랜스랙 스키머 사용 회수작업 실시	◦ VOSS, U, V, J형 시스템으로 운용 속도조절
협잡물이 포함된 고점도 기름	◦ 스크루스키머 및 진공 스키머등 사용 유회수 작업 실시	◦ 저유 바지등 용량이 큰 저장용기 동원

○ 유흡착재 사용기술 Guide Line

해 상 조 건	회 수 작 업 방 법	유 의 사 항
해안, 부두등 해면이 잔잔한 해역	◦ 필요시 오일펜스 포워전장 후 시트, 패트형 유흡착재 사용 흡착 수거 ◦ 유출유가 오일펜스 아래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펜스 내측에 붐형 흡착재 설치	◦ 고점도유(5,000cSt이상) 사용 금지 ◦ 유회수기로 작업중이거나 계획된 경우에는 시트, 패트형 유흡착재 사용엄금
해안 간석지 암반, 지면 등에 고여 있거나 부착한 기름	◦ 유흡착재를 지면에 펼쳐 흡착 수거 ◦ 기름이 많이 고인 곳은 쪽대, 바가지 등으로 수거	◦ 기름 흡착이 완료된 흡착재는 신속히 수거 임시 저장소로 운반 ◦ 조간대 지역에 해수 만조전 흡착재 완전제거
고점도유의 흡착수거 방법	◦ 중질유 흡착용 합성비닐 등(스네어)을 8~12mm로프에 연결, 예인하거나 포워전장 오일펜스내 설치	◦ 예인시 부착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 ◦ 수거후 수밀 포장백에 담아 운반

※ 사용한 유흡착재 등은 반드시 수거, 지정폐기물로 처리

※ 유처리제 사용 계획이거나 유처리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유흡착재 사용 금지

해안방제기술 Guide Line

○ 암반해역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고압 세척기와 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로 수거한다

○ 자갈해역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저압 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로 수거하거나, 바가지나 양동이로 퍼 고, 냇마 등으로 갯닦기 작업을 실시한다

○ 모래해안

덩어리 상태의 유출유와 오염된 모래는 삽이나 갈퀴로 걷어 내거나, 페이로다로 수집하여 포장백에 담거나 임시저장소로 운반한다. 이 경우 모래의 굵기에 따라 차량진입 여부를 고려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많은 모래를 제거한 경우에는 깨끗한 모래를 보충한다

○ 갯벌과 습지대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저압 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로 수거하거나 지표면이 단단한 경우에는 모래해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침하되는 지역은 청소작업으로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람의 진입을 금지하고 저압세척을 실시한다.

수거된 기름 및 폐기물 처리기술 Guide Line

- 유출직후 회수되는 기름은 유체상태로 비교적 변질되지 않지만 대체로 회수유는 풍화작용을 받아 고점도유가 된다. 수면으로부터 회수된 기름은 대부분 고형의 쓰레기가 섞여 있으며, 유화되어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다.

기름의 양이 많을 때에는 가능한 기름 묻은 쓰레기와 구분하여 저장하며 처리·처분하는 방법도 구별하여야 한다

- 상온에서 기름을 펌프로 이송하는 경우 밀폐형 탱크에 저장할 수 있으나 비교적 고점도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할 때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탱크기열 코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다시 바꾸기 어려우므로 고점도유는 바지나 드럼 통 등의 개방형 용기에 저장하여 처리하거나 운반하기 용이하게 한다

- 해안 방제작업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해안의 가장 근거리에 폐유 임시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폐유 임시저장소는 큰 웅덩이를 만든 다음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비닐 등을 깔 후에 수거된 기름을 저장한다. 임시 저장소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지역담당 방제업체에서 주야간 경비를 세워 불필요한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고, 임시저장소에 저장된 기름은 육상처리업체를 지정하여 빠른 시간내에 인도 처리하여야 한다

- 임시 저장시설 및 장소에는 유조바지, 연안 폐유 저장시설, 해안 웅덩이 등이 포함되며, 해안 웅덩이는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후보지로 회수유에 의한 2차적 오염의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 저장시설 및 장소는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유출유에 대한 회수능력과 상설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임시 저장시설 및 장소를 지정·운영하고, 회수유 및 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과정이 적법한 업체에 의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회수유 및 폐기물 운반·처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된 업체들을 파악하여 연락처를 상시 파악하고, 처리 후 인도·인수증의확인을 통한 불법처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부 록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1.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2. 기본 원칙

- 신속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일관성: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 ○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
		○ 온, 오프라인 위기 징후 파악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
위기(crisis)	위기 발생	○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 위기 비상체제 가부 결정 -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 본부 설치 여부 결정 - 응급임무 부여/비상근무 개시

		○ 여론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 위기 언론대응 - 기자 연락 -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 보도자료 배포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위기 후 (post-crisis)	○ 결과 브리핑	
	○ 위기 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여론분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 회복 프로그램 - 상황관련 개선방안 - 내부조직원 결속프로그램 - 대외공중 회복프로그램 - 언론사 및 주요 공중, 관계자에 감사서신 발송	

4.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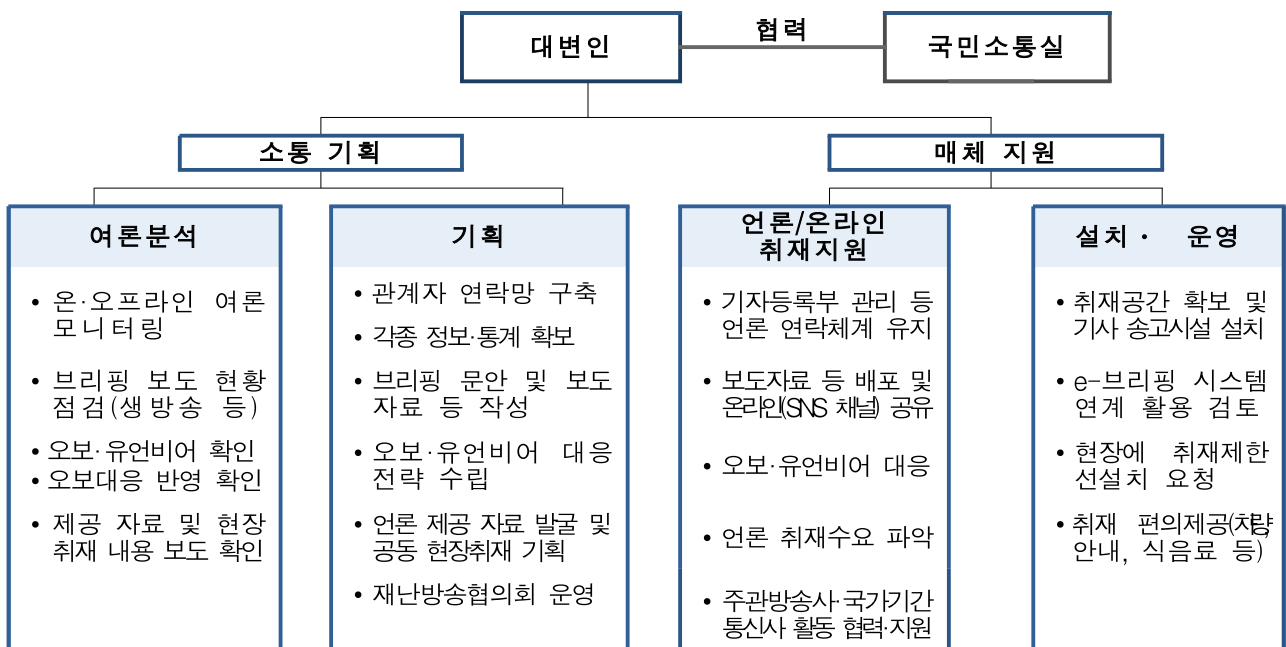
○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차관 또는 1급 이상 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 각 대변인은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고 순위를 미리 정해둠

○ 대변인 지위·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리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등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사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 파악된 바 로는','잠정','몇시 경','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결부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열거나 핫라인을 통해 입장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 여론) 모니터를 통해 여론·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유사 및 거짓 정보 등을 적시에 발견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초기 해명함으로써 소멸시키는 활동들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 자료 배포 등)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 사람 중심 시각에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 발표 시 위기대응 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한다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치가 상황에 맞춰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온라인에 해명 글을 게재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히 메시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한다.

6.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타. 언론을 공정하게 대하라

- 특정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소)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기능)

-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템플릿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겟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 - 인구통계적 특성 - 피해규모(정도)	- 진행상황/사실 전달 - 집회/연설 등 - 현재 상황 설명 - 루머대응 - 미디어 응대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 -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 -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 -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 -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 -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 사과 및 책임감 표현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 관계 개선 노력 - 이미지 개선 노력	○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 -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 -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 - 참여형 소통 방안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책임인 경우	○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 -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 -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 -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	○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 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

부 록 3

[피해보상 지원 참고자료]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

< 국제기금 보상 개요 >

- 해상선박사고는 선주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피해가 광범위하므로 선주 보호를 위해 선주책임을 제한
 - 상법은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도 제한(톤당 167SDR)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는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선주 책임한도를 최대 8,977만SDR(1,390억원)로 상향
- 또한 유조선의 선주책임액을 초과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을 설치하여 보상
 - 최대 75,000만SDR(1조 1,604억원)까지 보상(03 추가기금 기준)
 - * 추가기금 한도액은 선주책임한도액 및 92기금 보상한도액 포함한 금액
 - ※ 1 SDR=1,548.54원('18.2.28. 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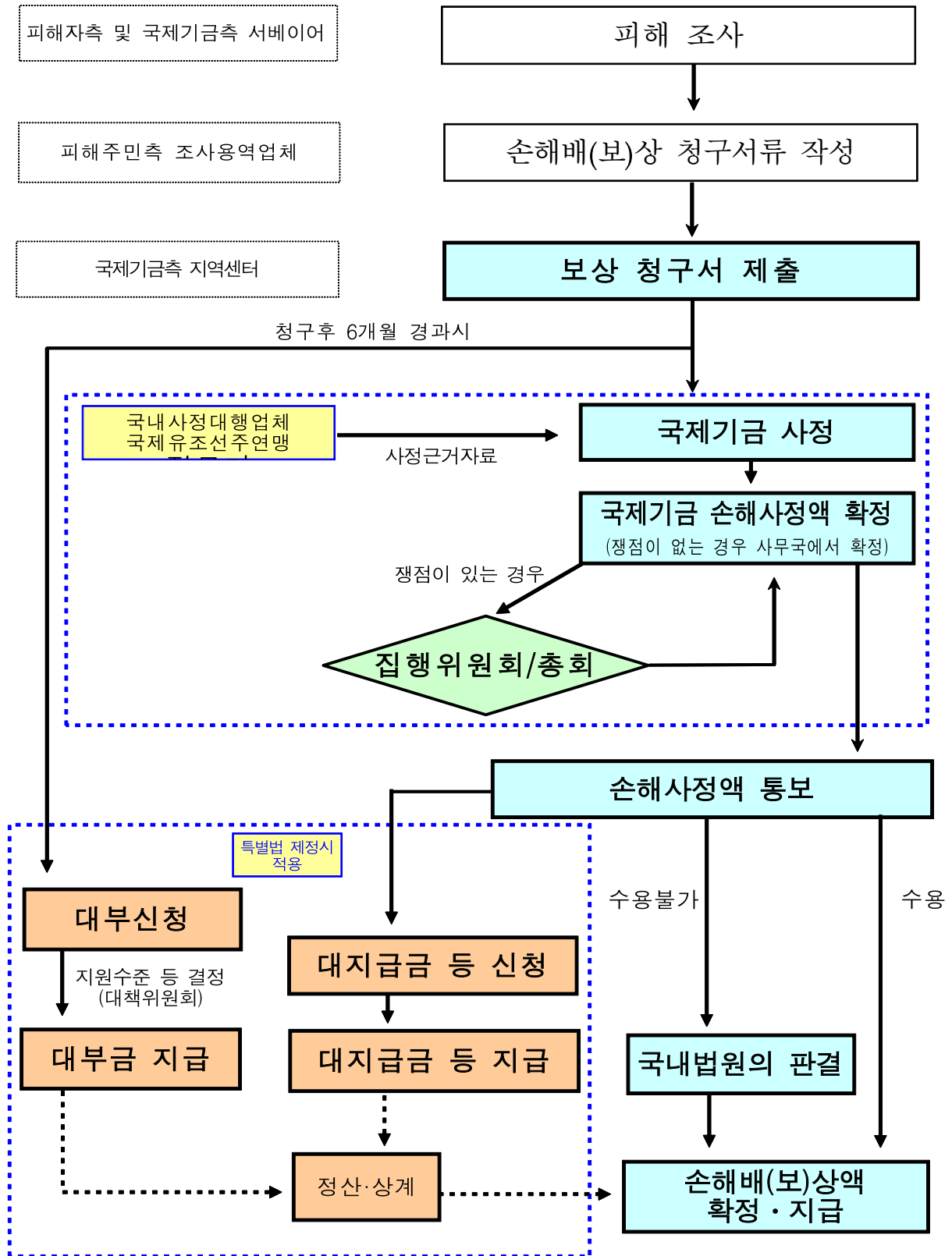
□ 피해자는 피해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제기금에 배상 청구

- 국제기금은 입증서류를 심사하여 손해 사정액을 확정
- 피해주민이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에 합의하면 배상금 지급
 - 미합의 시는 국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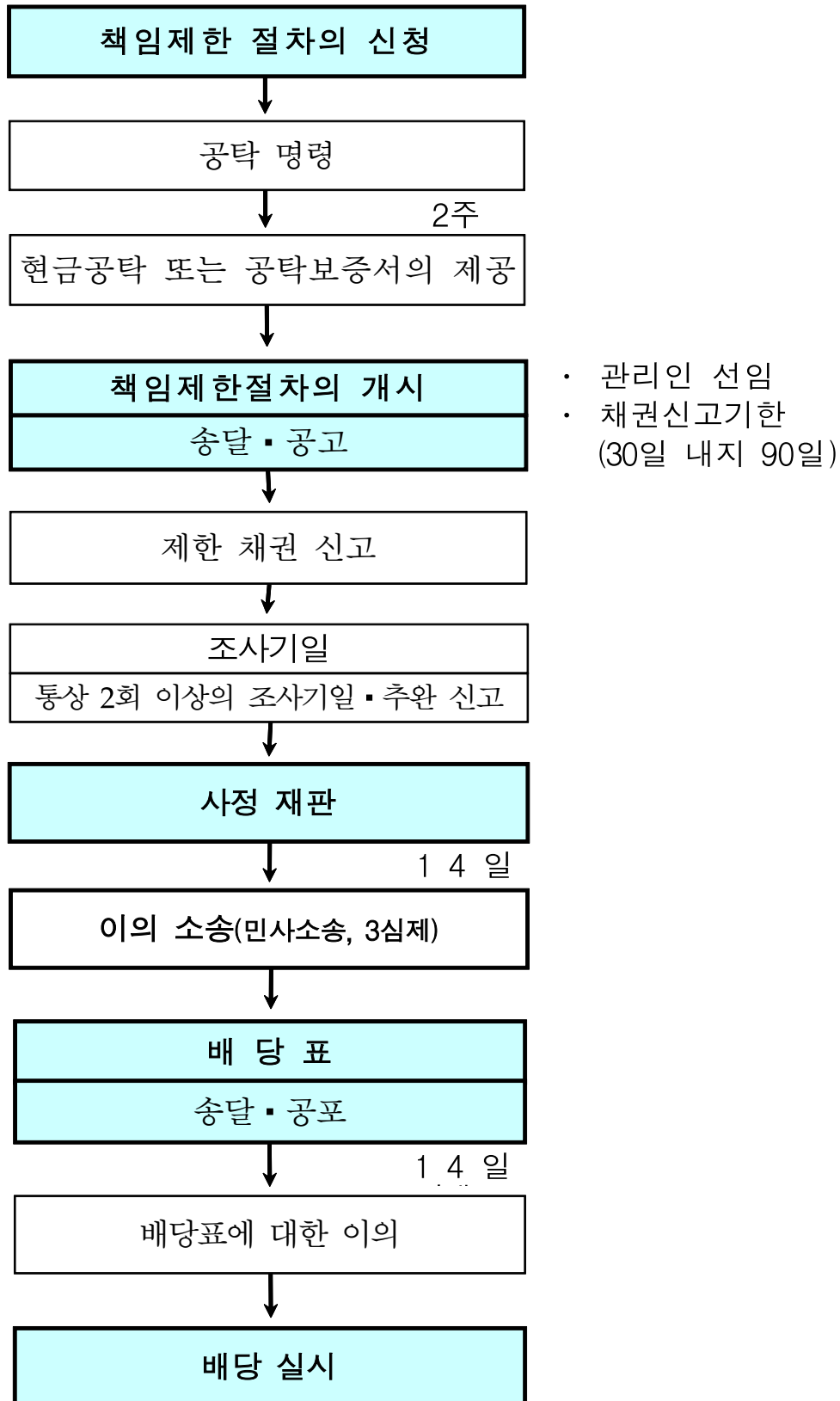
□ 허베이 사고는 추가기금 가입 전 발생한 사고로 국제기금 보상한도(3,216억원)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제도 미비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08. 3. 14. 제정·시행)

유류오염 피해배(보)상 절차



선주 책임제한 절차도



유류오염 피해보상 대상항목

항 목	보 상 범 위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Clean up and Preventive measures)	○ 방제정(Oil Skimmer 등) 운항비용 ○ Oil Fence 구입 및 설치비용 ○ 유처리제 구입비용 ○ 유흡착제 구입비용 ○ 유조선 파공부위 봉쇄비용 ○ 사고선박 예인비용 ○ 오염범위 및 재해상황 조사비용(헬기, 순시정 등) ○ 해안오염 청소 동원자 인건비, 식비, 작업복, 장갑, 장화, 바게스, 폐유처리통 구입비용 등 ○ 방제작업으로 인한 도로, 부두 및 제방에 가해진 피해 ○ 조류, 해양포유류 등 해양생물의 포획, 기름제거 및 환경재적응에 소요된 비용 ○ 오염제거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한 장비 및 자재 비용 ○ 방제작업 종사자, 방제정 등 운영요원 인건비 ○ 오염예방을 위한 구난비용 ○ 방제작업 종사자 숙박 및 식사비용, 여비 ○ 수거된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비용
물적 손해 (Property damages)	○ 양식장 시설물, 어선 그물 청소비용 등(감가상각 적용) ○ 양식장 어류 등 수산물 폐사에 따른 비용 ○ 오염된 선박 선체 청소비용 ○ 발전소의 해수 유입구 청소 및 염분제거 비용 ○ 유류에 오염된 재산의 세척·수리·대체비용
오염으로 인한 간접피해	○ 양식장 시설물 오염으로 인해 양식업 운영불가 손실 ○ 양식업자 종업원 유지비용 ○ 어선, 그물 등의 오염으로 어선어업 조업손실 ○ 자연채취 불가로 인한 피해(판매가에서 생산원가제외 금액) ○ 오염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오염피해 회피를 위해 조업 자제 어선 피해 ○ 정부의 식용부적합 결정에 의해 중단된 양식 및 어선 어업 피해 ○ 샘플링에 의한 화학성분 조사 및 기름냄새 여부 조사 필요
경제적 손실 (Pure economy loss)	○ 어선 어업의 어장 피해 ○ 호텔 및 음식점 영업 피해 ○ 오염의 부정적 효과 상쇄를 위한 홍보비용 ○ 오염으로 인한 염전운영 불가에 따른 피해 ○ 잉여 노동력 유지 비용
환경피해 및 유류 유출 후 조사연구 (Environmental damage and Post spill studies)	○ 환경 원상회복 비용 ○ 환경오염 피해 범위 및 현황 등에 대한 연구비용 ○ 클레임 청구 및 유류 유출후 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된 전문가 인건비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현황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 목 적

- 유조선 유류사고로 인한 오염피해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 국제기금협약을 제정하고 회원국 정유사들로부터 기금을 조성

□ Fund 설치 경과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71Fund협약을 채택('71.12.18)·발효('78.10.16)하여 71Fund 기금을 설치
- 71Fund 설립후 보상한도액 증액(60백만SDR → 203백만 SDR)을 위한 92Fund 협약 및 추가 증액(203백만SDR→750백만SDR) 을 위한 추가기금 협약('03.5.16, 03Protocol 채택) 설치
- 우리나라는 '92.12.8 71Fund에 최초 가입('93.3.8 발효)후 탈퇴하고, 현재 92Fund('97.5.16 비준, '98.5.16 국내발효)와 추가기금협약('10.5.6 비준, '10.8.6 국내발효)에 가입된 상태

□ 회원국('17.12월말 기준) : 92Fund 114개국, 추가 Fund 31개국

* 71Fund협약은 '02.05.24 효력 중단 및 '14.12.청산됨

□ Fund 운영기구

- 총 회 : 사무국장 임명, 분담금 및 예산, 인사 등 운영 전반 결정
- 집행이사회 : 사무국 지도감독 및 보상청구 심의·결정(15개 회원국, 매년 2~3회 회의개최)

□ 국제기금의 조성

○ 기금납부 의무자 : 해상수송으로 연간 15만톤 이상의 유류수령자

※ (아국 납부자)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GS-Caltex, 현대오일뱅크, S-Oil,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 회원국 분담유량/분담금('15년 유류수령량 기준, '17년 납부)

- 전체 : 약 15억 2천만톤, 한국 : 약 1억 3천만톤(8.56%)

- '17년 분담금 : 19억원

※ '93부터 '17년까지 분담금 납부액은 총 894억원이며,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액은 904억원

※ '07.12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은 진행 중

* 92기금 분담금 상위 10개국('15년 유류수령량 기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일본 (13.73%)	2	인도 (12.56%)	3	네덜란드 (8.79%)	4	대한민국 (8.52%)	5	이태리 (7.25%)
6	싱가포르 (6.94%)	7	스페인 (4.84%)	8	프랑스 (4.16%)	9	영국 (3.21%)	10	캐나다 (2.93%)

□ 국제기금 지급한도액(1차 선주, 2차 1992Fund, 3차 추가Fund 포함)

○ 선주책임한도 : 451만 SDR ~ 8,977만 SDR(약 70억원 ~ 1,390억원)

○ 92기금 보상한도 : 선주책임한도 포함 20,300만 SDR(약 3,150억원)

○ 추가기금 보상한도 : 선주책임한도 · 92기금 보상한도 포함 75,000만 SDR(약 1조 1,600억원)

* SDR(Special Drawing Right, IMF 특별인출권), 1 SDR=1,548.54원 기준('18.2.28. 기준)

부록 3-4

민사책임협약(CLC) 및 국제기금협약(FC) 주요내용

구 분		69CLC	71FC (’02.5.24종료)	92CLC	92FC (’00 개정협약)	2003 Supplementary
협약채택		’69.11.19	’71.12.18	’92.11.27	’02. 5.1	’03. 5
국제 발효		’75. 6.19	’78.10.16	’96.5.30	’03.11.1	’03.1.3
국 내	가입	’78.12.18	’92.12. 8	’97. 5.16	’03.11.1	’10.5.6
	발효	’79. 3.18	’93. 3. 8	’98. 5.16	’03.11.1	’10.8.6
선주책임 한도액 (SDR)		-톤 당 : 133SDR (206천원) -5천톤 : 66.5만SDR (10억원) *최대 : 1,400만SDR (217억원) (GT 105,263)		-5천톤이하 : 451만SDR (70억원) -5천톤초과 : 631SDR/톤 (977천원) 추가 *최대 : 8,977만SDR (1,390억원) (GT 135,119)		-
국제기금 보 상 액 (선주 보상액 포함)		6,000만 SDR (930억원)		-	20,300만 SDR (3,150억원)	75,000만 SDR (11,600억원)
적용범위		영해(12해리)		배 타적경제수역 (200해리)	배 타적경제수역 (200해리)	배 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가 입 회원국				133	114	31

※ 1 SDR = 1,548.54원(’18.2.28. 기준)

부록 3-5

IOPC펀드 가입('93.3.) 이후 유류사고별 손해배상 현황

선박명	사고일자 및 장 소	유출량 (톤)	피해배상액			
			총 액	배상 내역		
				방제비용 (백만원)	피해배상	
					청구액 (백만원)	피해배상액 (백만원)
제11삼보호 (520톤)	'93.4.12 (울 산)	4	220	177	506	어업 43
제5금동호 (481톤)	'93.9.27 (여 수)	1,280	16,246	5,602	91,674	어업 10,630
제1성일호 (150톤)	'94.11.8 (온 산)	18	38	9	476	어업 28
대웅호 (642톤)	'95.6.27 (고 정)	1	44	44	5,728	-
씨프린스호 (144,567톤)	'95.7.23 (여 수)	5,035	50,227	20,709 (잔존유제거 8,420)	73,554	어업 19,836 관광 538
여명호 (138톤)	'95.8.3 (여 수)	40	1,553	684	24,003	어업 600 관광 269
제1유일호 (1,591톤)	'95.9.21 (부 산)	2,232	27,178	12,393 (잔존유제거 6,824)	55,467	어업 7,960
호남사파이어호 (142,488톤)	'95.11.17 (여 수)	1,800	10,259	9,033 (환경평가 114)	8,208	어업 1,112
제1웅정호 (560톤)	'96.8.15 (부 산)	28	771	690	118	어업 17 소득손실 6 화물환적 10
제101정진호 (896톤)	'97.4.1 (부 산)	124	476	418	-	-
제3오성호 (786톤)	'97.4.3 (통 영)	1,688	7,674	867 (잔존유제거 6,739)	192	어업 69
경남1호 (168톤)	'97.11.7 (울 산)	20	265	189	752	어업 82
경원호 (144톤)	'03.9.12 (남 해)	100	3,328	2,921	2,794	어업 407
제7광민호 (139톤)	'05.11.24 (부 산)	64	2,012	1,900	479	어업 112
헤베이 스피리트호 (146,868톤)	'07.12.6 (대 산)	10,900	-	-	-	-

※ 국제기금 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93. 3. 8이후 발생한 국제기금 관련 사고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주요내용

□ 법적 성격

- 신속한 사고수습 및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 필요성 등을 감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한정된 특별법적 성격으로 제정('08.3.14 공포)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구성(제5조, 제6조)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장 등 15인 이내로 구성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 손해보전의 지원 사항 심의 등

- 대책위원회 아래 조정위원회를 두어 실무적인 협의·조정 담당

□ 선지급(제8조 대지급금과 대부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 등에 대해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전 배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범위의 대지급금 지급
- 또한 손해배 · 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의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금 지원

□ 국제기금보상한도 초과시 보상 특례(제9조)

- 피해가 국제기금보상한도(3,216억원) 초과시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의 범위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한도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 기타 정부지원대책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제11조)

- 정부는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 및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제11조 2항)

□ 지역경제 활성화(제12조)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요

<'92. 12. 8제정, '03.12.11개정>

□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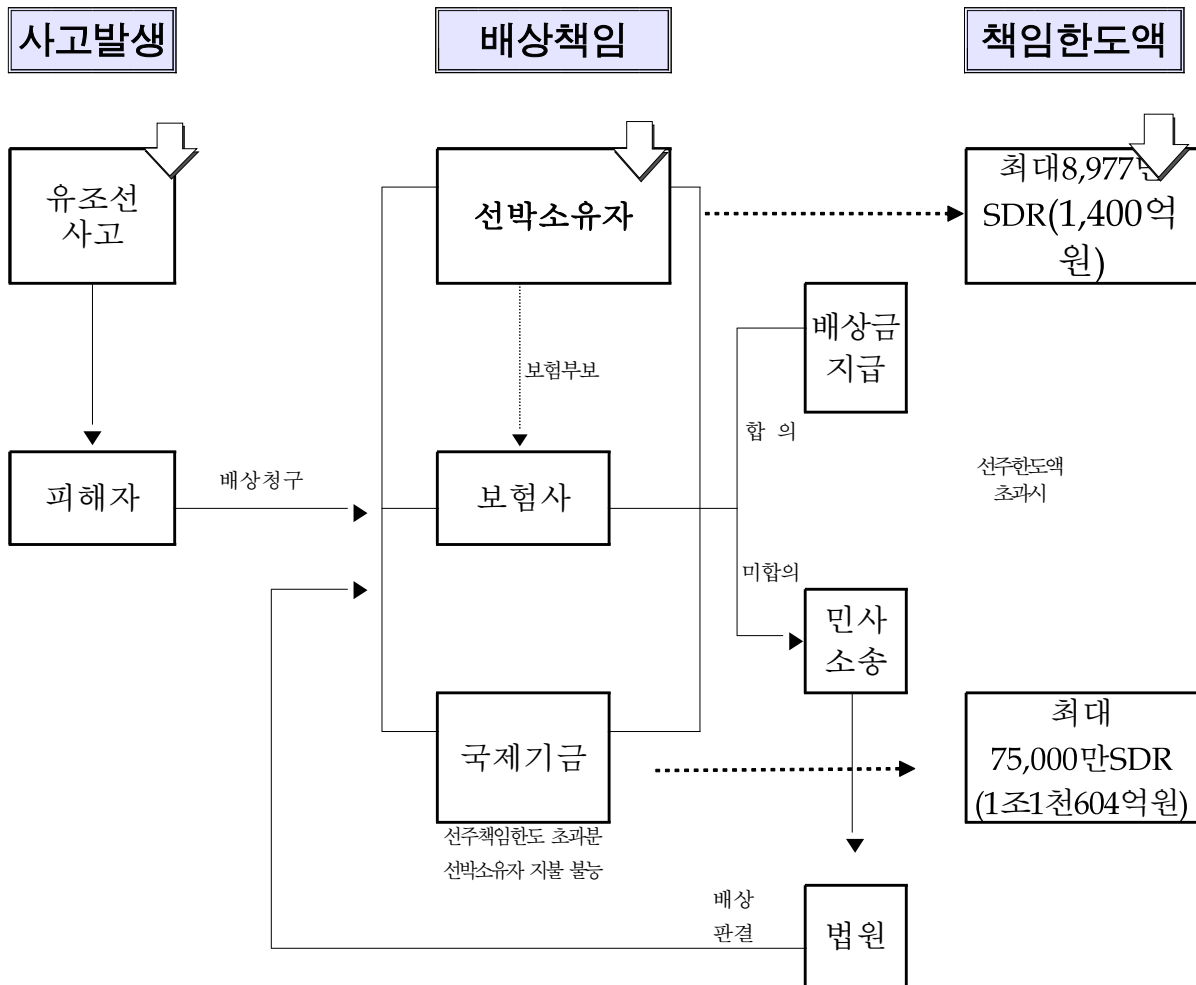
- 유조선 등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선박에 의한 유류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 유류오염손해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 한도액
 - 5천톤이하 선박 : 451만 계산단위(SDR)
 - 5천톤초과 선박 : 451만 계산단위 + 5천톤초과 톤수 × 631 계산단위(단, 총액은 8,977만 계산단위 범위내-약 1,400억)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강제
 -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총톤수 1천톤 이상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함(국제 협약에서는 적재톤수 **2,000톤 이상**)
-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 손해액에 관하여 국제기금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분담유량의 보고 및 국제기금의 납부
 - 선박으로부터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에 분담유량을 보고하여야 함
 - 정유자 등 유류수령인은 협약규정에 따라 산출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참고자료>

유류오염 손해배상 절차도



* 보험사 : 선주상호보험(P&I, Protection and idemnity Insurance)

* SDR(Special Drawing Rights) : IMF 특별인출권, 1SDR = 1,548.54원('18.2.28. 기준)

유류오염 피해보상관련 전문용어 해설

1. 92CLC(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 92년 국제민사책임협약

- o 1992년 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2. 92FC(1992 Fund Convention) : 92년 국제기금협약

- o 1992년 제정된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3.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 o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 자원 개발을 위하여 1945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2007년 가맹국은 총 185개국임

4.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 o '59.1.6. 설립된 세계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UN산하 정부간 국제기구(영국 런던소재). 정회원국이 16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62.4.10 가입.
- o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MSC) 등 5개 분과위원회, 11개 소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 '07년현재 35개 국제협약과 921개 결의서 채택

5. IOPC Funds(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

- o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민사책임협약에 의한 배상금을 초과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화주측 석유업계가 분담하여 만든 기금으로, 민사책임협약 체결국만이 동 기금의 체결국이 될 수 있으며 1971년 채택하여 1978.10.16일 발효

6. ITOPF(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 국제유조선주연맹

- o 해양에서 유류, 화학물질 기타 위험물질의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주들을 대신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오염에 대한 기술적 권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

7. OPA(Oil Pollution Act 1990) : 미국유류오염법

- o 1989.3.발생한 Exxon Valdez호 기름오염사고에 따른 효율적 기름제거 및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책임을 대폭 강화한 유류오염법.

8. P&I CLUB(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 o 선주들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상호보험 형태로 담보하기 위해 1869년 최초로 영국 런던에 설립된 보험조합으로 통상 UK P&I Club 이라 함.
- o 16개 클럽중 최대 가입톤수를 확보하고 있어 규모와 위상 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한국P&I Club은 '00. 1월 설립.

9.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

- o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특별인출권으로 1SDR=1,584원(08.3.13현재)임

10. SLQ(Standing Last in the Queue) : 최후순위청구

- o 국제기금 보상청구액에 대한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방제비 등을 국제기금 등에 피해보상의 후순위로 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SLQ 금액은 국제기금의 지급을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피해 사정액이 국제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혀 보상받지 못함

11. SFP 2003(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 추가기금의정서

- o EU의 유류피해 보상한도액 증액 요구에 따라 IMO에 의해 채택(03.5)되어 발효(05.3)된 추가기금협약으로 최대 약 1조2천억원까지 보상
- ※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0.5.6. 가입 및 '10.8.6부터 발효

부 록 4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사고수습 관계기관 비상 연락망

□ 중앙 행정기관

관 련 기 관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BH	○ 국정상황실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260 02-770-4383
국무조정실	○ 안전환경정책관 안전관리과 환경정책과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해양수산정책과	044-200-2348 044-200-2351 044-200-2240
기획재정부	○ 세제실 관세제도과 ○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 ○ 예산실 안전예산과	044-215-4411 044-215-7353 044-215-7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02-2110-1944 02-2110-1997
외교부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	02-2100-7748
법무부	○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방부	○ 전력지원관리실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8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 ○ 재난관리실 사회재난대응과 ○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044-205-1540~5 044-205-5217 044-205-5256 02-2100-3768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과	044-203-2290 044-203-2918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4-202-2551 043-719-7143

관 련 기 관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환경부	○ 자연보건국 자연공원과 ○ 자연보건국 생물다양성과 ○ 환경정책실 환경보건관리과	044-201-7314 044-201-7244 044-201-6815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5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환경정책과 ○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안전관리과 종합상황실 ○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	044-200-5283 044-200-5851 ~ 9 044-200-5895 ~ 7 044-200-5511 ~ 24
해양경찰청	○ 상황센터 ○ NAVTEX ○ 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	044-205-2142 044-205-2542 044-205-2195
기상청	○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	02-2181-0750
관세청	○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042-481-7852
소방청	○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044-205-7616
문화재청	○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경찰청	○ 위기관리센터(평일, 주간) ○ 치안상황실(야간, 휴일)	02-3150-2856 02-3150-2229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314

□ 지방해양수산청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AX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300 051-609-6400 051-609-6500	051-609-6319 051-609-6419 051-609-6519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해양수산보안팀	064-720-2751	064-720-275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40 032-880-6210 032-880-6470	032-885-0023 032-884-3563 032-885-003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30 061-650-6050 061-650-6080	061-654-2456 061-654-2076 061-654-212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55-249-0320 055-249-0330 055-249-0410	055-242-1260 055-249-0341 055-249-040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52-228-5513 052-228-5514 052-228-5515	052-228-5559 052-228-5569 052-228-558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33-520-6141 033-520-6161 033-520-6231	033-520-6140 033-520-6180 033-520-62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40 063-441-2250 063-441-2260	063-441-2352 063-441-2353 063-441-235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61-280-1640 061-280-1660 061-280-1670	061-280-1655 061-280-1666 061-280-1677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54-245-1520 054-245-1530 054-245-1650	054-242-1326 054-245-1592 054-245-165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31-680-7220 031-680-7230 031-680-7240	031-680-7229 031-680-7239 031-680-724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물류과 ○ 해양수산환경과	041-660-7631 041-660-7651 041-660-7671	041-663-0347 041-663-0348 041-664-8541

□ 지방해양경찰청 · 서

해역별	지역 번호	해양오염방제과		종합상황실	
		전화	FAX	전화	FAX
동해지방해양경찰청	033	680-2191	680-2997	680-2242	680-2942
속초해양경찰서	033	634-2191	634-2991	634-2242	634-2942
동해해양경찰서	033	741-2191	741-2991	741-2242	741-2942
울진해양경찰서	054	502-2191	502-2997	502-2242	502-2900
포항해양경찰서	054	750-2191	247-2991	750-2242	750-294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061	288-2191	288-2991	288-2242	288-2942
여수해양경찰서	061	840-2191	840-2994	840-2242	840-2942
완도해양경찰서	061	550-2191	555-5052	550-2242	550-2942
목포해양경찰서	061	241-2191	241-2991	241-2242	241-2942
부안해양경찰서	063	928-2191	928-2991	928-2242	928-2900
군산해양경찰서	063	539-2191	539-2991	539-2242	539-294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051	663-2191	663-2997	663-2242	639-3513
울산해양경찰서	052	230-2191	230-2991	230-2242	230-2942
부산해양경찰서	051	664-2191	664-2991	664-2242	664-2900
창원해양경찰서	055	981-2191	981-2991	981-2242	981-2942
통영해양경찰서	055	647-2191	647-2991	647-2242	648-611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032	835-3191	835-3491	835-2242	835-2942
인천해양경찰서	032	650-2191	650-2291	650-2242	650-2942
평택해양경찰서	031	8046-2191	8046-2991	8046-2242	8046-2942
태안해양경찰서	041	950-2191	950-2991	950-2242	950-2942
보령해양경찰서	041	402-2191	402-2991	402-2342	402-294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064	801-2191	801-2991	801-2242	801-2900
제주해양경찰서	064	766-2191	766-2991	766-2542	756-2900
서귀포해양경찰서	064	793-2191	793-2991	793-2242	793-2900

□ 해상교통관제센터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4)	대산항VTS	041-950-2550/2650/2750	041-663-0349
	평택항VTS	031-8046-2550/2650/2750	031-8053-7789
	인천항VTS	032-835-2550/2650/2750	032-835-2850
	경인항VTS	032-835-2552/2652	032-835-2452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6)	진도연안VTS	061-288-2550/2650	061-544-4469
	여수연안VTS	061-840-2450/2550/2850	061-840-2650
	여수항VTS	061-840-2552/2652/2752	061-840-2852
	완도항VTS	061-550-2550/2650	061-550-2450
	목포항VTS	061-241-2550/2650/2750	061-241-2450
	군산항VTS	063-539-2550/2650/2750	063-539-2850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5)	통영연안VTS	055-647-2550/2650/2750	055-647-2950
	울산항VTS	052-230-2550/2650/2750	052-230-2850
	부산항VTS	051-664-2550/2650/2750	051-664-2850
	부산신항VTS	051-663-2550/2650/2750	055-545-0406
	마산항VTS	055-981-2550/2650/2651	055-981-2850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2)	동해항VTS	033-680-2550/2650/2750	033-680-2850
	포항항VTS	054-750-2550/2650/2750	054-750-2850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1)	제주항VTS	064-801-2550/2650/2750	064-801-2850

☐ 지방자치단체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AX
부산광역시청	○ 해양산업과	051-888-5261	051-888-5259
인천광역시청	○ 해양도서정책과	032-440-4894	032-440-8698
울산광역시청	○ 항만수산과	052-229-2984	052-229-2969
경기도청	○ 해양항만정책과	031-8008-4517	031-8008-4399
강원도청	○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033-660-8374	033-660-8419
충청남도청	○ 해양정책과	041-635-4763	041-635-3072
전라북도청	○ 해양수산과	063-280-2673	063-280-2819
전라남도청	○ 해양항만과	061-286-6990	061-287-4795
경상북도청	○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과	053-950-3626	053-950-2829
경상남도청	○ 해양수산과	055-211-3831	055-211-3819
제주특별자치도청	○ 해양산업과	064-710-3223	064-710-3259

☐ 유관단체 전화번호

기 관 별	정보센터 전화번호		당직실
	정보센터	FAX	
부산항만공사	051-999-3000	051-988-0888	051-999-3114
인천항만공사 (안전보안팀)	032-890-8000	032-886-7991	032-890-8297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안전팀)	052-228-5300	052-228-5329	010-9596-5601 052-228-5300
여수광양항만공사	061-797-4435	061-797-4487	061-797-4300
한국해운조합	02-6096-2081	02-6096-2029	-

□ 해양환경공단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AX
본 사	○ 오염사고 비상전화 ○ 방제대응팀	02-3498-8600 02-3498-8601	02-3462-7707
부산지사	오염사고 담당	051-466-3914	051-466-3915
인천지사	〃	032-884-7702	032-884-7703
여수지사	〃	061-654-6431	061-654-6430
울산지사	〃	052-261-3413	052-260-8909
대산지사	〃	041-664-9101	041-664-9104
마산지사	〃	055-223-8833	055-244-4229
동해지사	〃	033-531-4056	033-532-3559
군산지사	〃	063-443-4813	063-443-4816
포항지사	〃	054-273-5595	054-273-6657
평택지사	〃	031-683-7973	031-683-7901
목포지사	〃	061-242-9663	061-242-9665
제주지사	〃	064-753-4376	064-753-4375

□ 민간방제(유창청소) 업체

해경서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	구 분
인천(7)	(주)서해그린	인천 중구 항동7가 27-54 화인통상빌딩 3층	032-882-4666	032-882-4999	유창청소
	경인해양환경(주)	인천 남구 학익동 587-67	032-831-3341	032-831-3380	유창청소
	미래환경	인천 중구 항동7가 58-4	032-881-0440	032-881-0441	유창청소
	송도항업(주)	인천 중구 제물량로 189, 4층	032-764-6668	032-764-6670	유창청소
	(주)영화기업사	인천 중구 해안동 2가 8	032-763-7224	032-762-4588	검 업
	주원환경(주)	인천 중구 항동7가 27-211 유한빌딩 301-A호	032-888-3411	032-888-3153	검 업
	(주)클린포트	인천 중구 항동7가 58-7 씨사이드빌리지 502호	032-882-8279	032-883-8279	검 업
포항(2)	(주)씨앤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35번길 4-18	054-278-8200	054-278-4554	검 업
	(주)블루씨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해운센터 301호)	054-274-2040	054-278-2043	검 업
울산 (12)	(주)세청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249	052-257-1120	052-257-1121	유창청소
	(주)클리어씨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33, 비동 7호	052-256-9126	052-256-9128	유창청소
	(주)엠앤에스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51, 3층	052-227-8595	052-227-8597	유창청소
	(주)골든씨	울산 남구 장생포동 249, 1509호	052-261-2606	052-2612607	유창청소
	㈜영진마린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179, 201호	052-268-5509	052-268-5508	유창청소
	㈜영남해상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052-238-3078	052-238-5288	방 제
	㈜대상해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 1길 57	052-265-9517	052-269-3323	방 제
	(주)동화교역상사	울산 장생포고래로 179번길69	052-265-9137	052-265-9139	검 업
	(주)디에이치환경기술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179	052-261-2200	052-261-2227	검 업
	(주)우주환경	울산 남구장생포 고래로257-1	052-227-3287	052-227-3387	검 업
	울산비엔씨(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로171	052-257-5775	052-269-4042	검 업
	(주)블루코리아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307	052-716-0850	052-716-0086	검 업
서산(2)	우진해운(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183-12	041-681-9596	041-681-9598	검 업
	㈜국양쉬핑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흥2길 126-8	041-681-7522	041-681-7525	방 제
평택(3)	(주)평택그린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373-5	031-686-6796	031-686-6798	유창청소
	(주)서해석유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항남로 194-75	031-683-0549	031-683-0550	유창청소
	㈜씨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34-9	031-683-8666	031-683-8660	검 업
목포(1)	(유)해상토탈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42(초원오피스텔 901호)	061-285-7413	061-284-7414	검 업
군산(1)	(유)레오택해운	전북 군산시 해망로 204 한국빌딩1층(장미동 18-11)	063-442-5189	063-442-5191	검 업
여수 (14)	㈜우리환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2-22 101호	061-922-4344	061-922-4345	유창청소
	코스람환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 27-3	061-686-7577	061-686-7578	유창청소
	㈜아라	전남 여수시 시전3길 8-21	061-685-5151	061-692-5150	유창청소
	(유)대륜	전남 여수시 공화동 836-4	061-665-0030	061-665-0031	유창청소
	㈜한국해운	전남 여수시 오천동 135-8	061-686-6609	061-692-0081	방 제
	서진환경	전남 여수시 둔덕동 487-2(2층)	061-651-9057	061-654-9057	검 업
	(주)하나환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51-11	061-643-0523	061-643-0523	검 업
	(주)광양해양환경	전남 광양시 중동 1847-2	061-793-2420	061-793-2421	검 업
	(주)동양	전남 광양시 구마6길 15(중동)	061-666-4181	061-666-4183	검 업
	동성항운(주)	전남 여수시 수정동 343-10	061-666-1221	061-666-1224	검 업
	우진실업(주)	전남 여수시 광무동 119-1 흥국생명빌딩 5층	061-666-4333	061-666-4335	검 업
	(유)피케이엘	전남 여수시 여서1로 78	061-654-9603	061-654-9603	검 업
	그린포스(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5 포스코해운센터	061-794-4666	061-794-4565	검 업
	효동항업(주)	전남 여수시 동문로 98	061-665-7968	061-666-1494	검 업

해경서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	구 분
통영(2)	(합)경남마린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055-681-3473	055-681-3475	유창청소
	에이스환경	경남 거제시 지석2길 20	055-635-2348	055-633-2509	검 업
창원(1)	(주)동화교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7-135	055-224-1193	055-224-1194	유창청소
부산 (42)	(주)태창마린	부산 사하구 구평동 399번지 강남조선내	051-417-7360	051-413-5360	유창청소
	(주)제원산업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39	051-412-0769	051-417-5402	유창청소
	(주)수림환경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11-1 동흥빌딩 201	051-242-6591	051-441-6234	유창청소
	대남환경(주)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702-12번지	051-416-8491	051-416-8180	유창청소
	(주)동화교역상사	부산 영도구 태종로50번길 31, 303호(대교동1가)	051-418-3446	051-418-3443	유창청소
	(주)보성항업	부산 중구 중앙대로 21(부산대파트 314호)	051-243-1601	051-243-1602	유창청소
	(주)청해환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50번길 35	051-418-2272	051-418-2273	유창청소
	(주)대창그린피아	부산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시티오피스텔 502호	051-246-9242	051-246-9244	유창청소
	(주)바다환경	부산 중구 백산길 8-1(동광동3가, 대우빌딩3층)	051-231-2251	051-231-2252	유창청소
	육일해상(주)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36, 707호	051-246-6180	051-245-6180	유창청소
	(유)대항환경	부산 서구 총무동 1가 23-1번지	051-231-9117	051-231-9118	유창청소
	(주)우경에너지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77(주례동)	051-316-3721	051-315-4720	유창청소
	대흥마린(주)	부산 중구 중앙대로 29번길 2-5	051-256-2325	051-256-2324	유창청소
	(주)청해마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3-12 601호	051-442-5550	051-442-5560	유창청소
	(주)원양해상	부산 중구 총장대로 5번길 56-2, 403호	051-996-9993	051-465-5249	유창청소
	(주)다원마린	부산 영도구 태종로 107, 801호	051-417-0032	051-417-0052	유창청소
	(주)대원환경	부산 중구 총장대로 5번길 56-2, 402호	051-996-9989	070-7843-9990	유창청소
	(주)해진환경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18, 태평빌딩 A동 336호	051-256-8828	051-256-8829	유창청소
	거해종합환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04번길 11(남항동 2가)	051-413-1178	051-413-1179	유창청소
	범진해상	부산 동구 중앙대로 251 번길 34(2층)	051-442-1101	051-442-1103	유창청소
	(주)태흥마린	부산 동구 중앙대로286번길7-7501호	051-462-7171	051-465-1343	유창청소
	(주)태평양해양산업	부산 영도구 해양로117번길 32(청학동)	051-414-9303	051-413-0234	방 제
	수일종합환경(주)	부산 동구 초량1동 1212-3 창원빌딩203호	051-463-5823	051-463-5835	검 업
	(주)무성항업	부산 사하구 감천1동 387-12 무성빌딩	051-292-9966	051-208-7717	검 업
	(주)선화산업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92-15	051-405-8500	051-405-7722	검 업
	(주)진명마린타임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0-24	051-637-4040	051-637-4039	검 업
	(주)그린-씨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419번길 51(구평동)	051-261-8644	051-264-8644	검 업
	(주)동승종합	부산 영도구 대교로2번길31, 302호	051-441-2027	051-464-2027	검 업
	(주)해룡산업	부산 영도구 대교로(봉래동)2번길 31, 02호	051-416-4240	051-416-4230	검 업
	에스에스환경(주)	부산 중구 중앙동4가83-6 국일빌딩 다동 304호	051-900-5790	051-463-1129	검 업
	(합)금호산업	부산 중구 부평동 4가 45 향원부평타워 301호	051-231-8556	051-246-2700	검 업
	(주)선경종합환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14-2	051-418-0999	051-418-2003	검 업
	대용환경(주)	부산 영도구 대평동 1가 47	051-413-4040	051-413-3883	검 업
	(주)성원그린	부산 사하구 구평로10(구평동 354번지)	051-266-0696	051-266-0904	검 업
	(주)케이오씨종합환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73번길 32(봉래동 1가, 1층)	051-418-2311	051-418-2312	검 업
	(주)에스피진성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26-2번지	051-417-3221	051-417-3224	검 업
	(주)정해	부산 중구 해관로 9, 51(동광동1가)	051-257-9293	051-257-9294	검 업
	(주)클린시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6번길 13-7	051-467-1734	051-467-1735	검 업
	뉴삼우마린(주)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70-1번지	051-418-0606	051-418-6201	검 업
	(주)수현토탈마린	부산 영도구 절영로15-1 우창빌딩5층	051-418-5757	051-418-5754	검 업
	부산항업(주)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9	051-467-0091	051-467-0075	검 업
	센텀환경(주)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7-5 KT중부산지사 5층	051-467-3500	051-467-0034	검 업

부 록 5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 오염사고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 업체의 비상연락망을 미리 알아둡니다.
- 응급약품,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니다.
- 해양오염 사고 시 보상을 위한 증빙자료(소득 등)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고를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서(혹은 해양수산청)에 신속히 신고(122번)하고, 대응기관이 도착하기전 현장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 위험지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하며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위험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음식물은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오염물에 접촉된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합니다.
- 방제작업 참여(자원봉사)하는 경우
 - 마스크와 안전복 등을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 방제물품 등을 배부 받고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는 교육을 숙지합니다.
 -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고수습을 지원합니다.
- 현장에서는 대응기관의 현장 안전관리 계획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사고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파합니다.

□ 해양오염사고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제적 손실 여부를 점검하고 보상을 청구합니다.
- 추가적인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3, 5293

부 록 6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의사항]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 · 선포건의

중앙본부장은 2개 시·도 이하의 재난상황인 경우 사태를 직접 선포할 수 있으며, 3개 시·도 이상의 재난상황인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태선포 건의

□ 응급조치

지역통제단장과 시·군·구청장은 재난시 수방, 진화, 구조, 구난,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시설복구, 방역, 긴급구조 및 수송,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의 예보 · 경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시 예보, 경보 등을 위해 통신시설 우선 사용, 방송시설 사용, 신문 및 인터넷 게재 등 요청할 수 있음

□ 동원명령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시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 물자, 장비 등 동원과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대피명령 · 위험구역의 설정 · 강제대피 · 통행제한

시·군·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① (대피명령) 해당지역의 주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
- ② (위험구역 설정) 필요시 위험구역의 설정, 출입제한 등의 조치
- ③ (강제대피) 대피명령의 불이행이나 위급성이 판단되면 위험구역안의 주민을 강제대피 및 퇴거조치, 관할 경찰서장의 지원 요청
- ④ (통행제한) 응급조치를 위한 물자의 수송, 구조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통행금지 등 요청

□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재난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응급조치

재난시 소관업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부 록 7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 403호)」**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7. 12. 21. 해양수산부 훈령 제4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위기경보수준"이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는 위험경보의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와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경보 발령과 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피해자 신원파악·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수습본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분부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재난 유형별 실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
 - 가. 해양선박사고 : 해사안전국장
 - 나. 여객선사고 : 해운물류국장
 - 다. 해양환경오염사고, 원양 어선사고 및 조수 : 해양정책실장
 - 라. 연근해 어선사고 및 적조 : 수산정책실장
 4. 수습본부 상황실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해양수산부 주관 재난·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분부장, 안전책임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기경보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기경보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기경보수준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기경보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경보 발령)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수습본부장이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 때에는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수산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제14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5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1. 선박사고(어선사고 제외) : 해사안전관리과장
2. 어선사고 : 어선정책팀장
3. 해양환경오염사고 : 해양환경정책과장
4. 적조 : 양식산업과장
5. 조수 : 해양영토과장

② 야간과 휴일의 상황관리는 해양수산부 당직근무자(상황실이 있는 경우 상황관리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과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문책요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03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습본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수습본부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제11조 관련)

순서	조치 목록	세부내용
1	평시 재난 및 사고 모니터링	- 119 등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법 제18조제3항)
2	재난 및 사고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재난 및 사고상황 접수, 초동보고 -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수습본부 설치여부 판단 - 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 수습본부 상황실 근무요원 근무명령 (필요시 관계부처 등 파견요청) - 응급구조·구급 등 사고수습 초동대응
3	상황실 가동	- 상황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요령 교육 - 상황전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 수시 상황전파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물자 확인
4	재난(사고)발생상황 보고·전파	- 재난(사고)발생시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에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전파 (서면, 전화)
5	상황판단회의 (자체위기평가회의)개 최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대책 마련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행정 안전부와 사전 협의 (매뉴얼에 따라)
6	응급조치 대응	- 주민대피·구호 계획 - 주민생활 필수 기능 (전기·수도·가스 등) 응급조치 - 통행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7	현장사고수습본부 가동	- 특별행정기관을 통한 지역사고수습본부 가동 - 유관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담당자 파견요청 - 사고수습, 응급복구, 구조·구급 지휘 (지역긴급구조통제단 협조) - 현장상황 수습본부·지자체·관련기관 보고·전파 - 관련 공무원, 전문가 파견
8	재난상황 언론홍보·대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부처 대변인실)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인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행정안전부)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 검토 - 범정부적 재난 및 사고 수습대응